

630.951
L293 L.
1997 v.1

1997년 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1996. 11. 18

[관계규정 해설 및 시책안내]

총6권중 제1권

농 립 부

일 리 두 기

1. 이 지침서는 모두 6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부·농촌진흥청(사업명 뒤에 *표시한 것)·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권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시책안내를 수록하였고, 제2권부터 제6권까지는 분야별 사업시행지침(1997년도 사업시행 요령과 1998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국립농산물검사소 출장소, 농촌지도소, 농·축·임·삼협조합,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 지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1997년도 사업비는 잠정금액이므로 정부예산의 국회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각 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권 : 관계규정 해설 및 시책안내
 - 제2권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3권 : 농업(원예특용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4권 : 축산업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5권 : 농촌개발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6권 : 임업및산촌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6. 이 지침서의 내용은 AFFIS를 통하여 PC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정보센터(전화 02-589-20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례

제1권 [관계규정 해설 및 시책안내]

I. 농림사업실시규정 해설	1
1. 배경	3
2. 특징	5
3. 보완사항	6
4. 해설	12
제1장 총칙	12
제2장 자율사업	16
제3장 공공사업	22
제4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23
제5장 보칙	25
[별표] 사업신청 및 지원 절차도	26
II.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해설	27
1. 배경	29
2. 농림사업자금 현황	29
3. 주요골자	30
4. 해설	31
III. 시책안내	43
1. 42조원 지원계획	45
2. 농어촌특별세사업 지원계획	47
3. 농림사업자금 대출안내	49
4. 농림사업 평가제도	56
[참고자료]	57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 제877호)	59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부 훈령 제875호)	104

제2권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I. 생산기반확충	117
1. 영농규모적정화(자율)	119
2. 농약안전사용장비보급(자율)	150
3. 토양개량사업(자율)	158
(토양개량제공급, 객토)	
4. 감자원종망실재배농가지원*(자율)	179
5. 밭기반정비(공공)	187
6.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공)	203
7. 일반경지정리(공공)	218
8. 배수개선(공공)	226
9. 수리시설개보수(공공)	248
(농조수리시설개보수,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 농조저수지준설)	
10. 대·중규모용수개발(공공)	297
11. 지표수보강개발(공공)	325
12. 대단위농업종합개발(공공)	347
13. 대구획경지재정리(공공)	366
14. 소규모농업기반시설및농정시책추진(공공)	384
(농지관리위원회운영, 공동·항공방제, 지하수개발, 지표수개발,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한우쌍자생산, 개량물꼬보급, 지역특화작목개발, 시군수리시설개보수)	
15. 서남해안간척(공공)	476
16. 농지정보화(공공)	493
17. 주요농작물원원종및원종생산지원*(공공)	497
18. 인공씨감자대량생산시설(공공)	502
II. 농업기계화	509
19. 농기계구입자금지원(자율)	511
20. 생산자조직농기계구입지원(자율)	576
21. 농기계보관창고설치(자율)	596
22. 농기계사후관리(공공)	606
23. 시설농업기자재생산시설및생산비축지원(공공)	627
24. 국제농림축수산기계박람회(공공)	635
III. 생산및유통개선	639
25. 미곡종합처리장(자율)	641
26. 임도정공장시설대체(자율)	667
27. 직접지불제실시(공공)	675

제3권 [농업(원예특용작물)구조개선]

I. 생산기반확충	677
28. 부적지감굴과원정비(자율)	679
29. 고품질우량채소종자개발보급(공공)	686
30. 한국자생란보존육성(공공)	690
31. 버섯종균접종원생산보급시설(공공)	692
32. 화훼계열화(공공)	699
II. 생산및유통개선	703
33. 과실생산유통(자율)	705
34. 시설채소생산유통(자율)	723
35. 양념채소생산유통(자율)	746
36. 고랭지채소생산유통(자율)	759
37. 화훼작물생산유통(자율)	770
38. 특용작물생산유통(자율)	791
39. 인삼생산지원(자율)	808
40. 농산물규격출하(자율)	824
41.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자율)	834
42. 과수대표생산(자율)	850
43. 인삼종합처리장(공공)	859
44.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공공)	866
45. 농산물공판장건설(공공)	883
46. 꽃박람회개최(공공)	896
47. 농산물물류표준화(공공)	897
48. 과실·화훼판매촉진(공공)	903
49. 산지포장개선시범사업(공공)	907
50. 농산물해외시장개척(공공)	920
(국제농산물박람회참가, 수출활성화사업, 수출홍보사업, 해외시장정보조사)	
51. 농산물무역진흥센터건설(공공)	947
52. 수출농산물수송체계지원(공공)	952
53. 농산물물류센터건설(공공)	955
54. 농산물포장센터건설(공공)	969
55. 생산자단체출하조절(공공)	989
56. 공동규격출하지원(공공)	994
57. 출하촉진자금(공공)	1008
58. 품목별생산자조직육성(공공)	1013
59. 채소가격안정사업(공공)	1018

제4권 [축산업구조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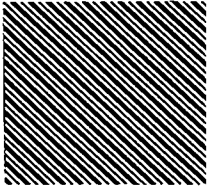
I. 사육기반확충	1025
60. 한우경쟁력강화(차율)	1027
61. 젓소경쟁력강화(차율)	1041
62. 돼지경쟁력강화(차율)	1051
63. 닭경쟁력강화(차율)	1061
64. 기타가축육성(차율)	1072
65. 조사료생산기반확충(차율)	1081
66. 축산분뇨처리시설(공공)	1099
67. 축산단지조성(공공)	1129
68. 가축계열화(공공)	1140
II. 생산및유통개선	1163
69. 축산물종합처리장건설(공공)	1165
70. 도축도매시설개선(공공)	1176
(축산물공판장건설, 위생도축시설확충)	
71. 가공판매시설및운영(공공)	1188
(가공직판장설치, 계란가공시설, 한우전문판매점설치, 냉장육전문판매점시설개선)	
72. 축산물품질향상및안전성강화(공공)	1223
(돼지고기품질개선, 규격돈구매자금, 축산물등급판정, 식육처리전문인력양성, 폐사축위생처리, 가축방역, 축산물검사, 부정축산물유통지도단속, 한우고급육생산기술개발, 재래닭품질육용화, 가축개량전산망구축)	
73. 소수급관리전산화(공공)	1325
74. 축산경영여건개선(공공)	1334
(경영상담지도, 양축농가해외연수, 축사표준설계도개발보급, 축산자조금, 특수가축 공제시범사업, 가축박람회, 교육홍보사업, 축분처리용膨脹왕겨생산시설)	
75. 축산업협동조합육성지원(공공)	1369
76. 사료제조시설설치(공공)	1373
(섬유질사료제조시설, 음식찌꺼기사료화시설)	
77. 축산기자재생산시설(공공)	1385
78. 학교우유급식(공공)	1391
79. 사료원료수입(공공)	1397
80. 조사사업(공공)	1401
(축산물가격및유통현황조사, 축산관측, 축산물생산조사)	
III. 소득원개발	1411
81. 축산경영자금(공공)	1413
IV. 가축개량	1417
82. 소정액생산및공급(공공)	1419
(한우개량단지운영, 한우정액생산공급, 젓소정액생산공급, 가축개량신기술보급, 가축인공수정사업)	
83. 종축등록및검정(공공)	1458
(종축등록, 젓소산유능력검정, 돼지능력검정, 닭경제능력검정, 가축개량협의회운영)	
84. 전문종돈업육성(공공)	1476
V. 기타사업	1485
85. 수의기술교육관건립(공공)	1487

제5권 [농촌개발]

I. 생산및유통개선	1489
86.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자율)	1491
87. 농산물가공산업육성(공공)	1501
II. 기술개발및정보화	1559
88.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자율)	1561
89. 농촌활력화시범사업*(공공)	1568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 지역특화시범사업)	
90. 농림수산정보화(공공)	1581
91. 농림수산기술개발(공공)	1585
92. 기술지도사업*(공공)	1595
(새기술보급및경보전농업시범사업, 농촌여성일감맞기사업, 농산물포장개선기술시범사업, 농업학습단체육성및품목별전문교육)	
III. 인력육성	1627
93. 농업인후계자육성(자율)	1629
94. 전업농육성(자율)	1664
95. 선도농업경영체육성(자율)	1697
96. 농업인자녀학자금(공공)	1714
97. 농림계특성화대학지원(공공)	1726
98. 자영농고육성(공공)	1733
99. 농업전문대학지원(공공)	1736
100. 한국농업전문학교지원*(공공)	1739
IV. 소득원개발	1743
101.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자율)	1745
102. 농촌특산단지육성(자율)	1810
103. 농공단지육성(공공)	1843
104. 농촌특산품판매장설치(공공)	1859
105. 한계농지정비(공공)	1867
106. 농업경영자금(공공)	1883
V. 생활환경개선	1889
107. 식생활개선교육홍보(공공)	1891
108. 농촌정주생활권개발(공공)	1895
(일반정주권개발, 문화마을조성, 농촌마을하수도설치)1951	
109. 농촌생활용수개발(공공)	1951
VI. 기타사업	1981
110. 농업인의날행사지원(공공)	1983

제6권 [임업및산촌구조개선]

I. 경영기반확충	1985
111. 산림경영장비지원(자율)	1987
112. 사유림협업경영(공공)	1993
113. 임도시설(공공)	1997
114. 영림계획(공공)	2001
115. 다목적산림경영시범단지조성(공공)	2005
116. 임업협동조합육성(공공)	2010
117. 임업기술보급(공공)	2012
(임업기술지도, 임업기술개발지원)	
II. 생산및유통개선	2021
118. 임목생산(자율)	2023
119. 임산소득증대(자율)	2028
(표고생산기반조성, 조경수분재생산, 단기소득임산물생산)	
120. 임산물가공지원(자율)	2047
(임산물이용가공원자재구입, 임산물가공이용시설, 산지가공공장설치, 평이용가공시설, 임산물저장시설)	
121. 표고종균생산시설(공공)	2067
122. 임산물유통개선지원(공공)	2070
(임산물종합유통센터, 간벌재활용장비, 임산물유통시설설치)	
123. 합판및보드류시설지원(공공)	2086
III. 인력육성	2093
124. 독립가및임업후계자육성(자율)	2095
125. 임업전문인력양성(공공)	2104
(임업기능인훈련, 임업기능인영림단장비지원)	
126. 임도시공장비지원(공공)	2116
IV. 환경임업육성	2121
127. 산림휴양공간조성(공공)	2123
(자연휴양림조성, 산림박물관건립및수목원조성)	
128. 산불방지대책(공공)	2130
129. 사방사업(공공)	2134
130. 산림생태보전(공공)	2138
(산림환경관리, 산림입지조사, 야생조수보호)	
131. 산촌종합개발(공공)	2150
V. 산림자원조성	2157
132. 해외조림사업(자율)	2159
133. 산림조성(공공)	2167
(조림사업, 육림사업, 간벌사업, 조림용묘목생산)	
134. 산림병해충방제(공공)	2199



I. 농림사업실시규정해설

여 백

1. 배경

- 문민정부 출범 이전의 농정은 『중앙집권적 하향식 농정』으로서 정부가 단독으로 시책을 결정하고 획일적인 지시에 의해 농정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정책입안과 추진과정에 농업인등을 비롯한 이해당사자가 배제되어 지역특성이 잘 반영되지 않았음
- 19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4. 6. 14.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1998년까지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완료하기로 하는 한편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여 1994. 7.부터 10년동안 15조원을 농어촌에 추가투입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농업인등 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와 자율에 바탕을 둔 상향식 농정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을 1994. 12. 14.에 제정하였음(1996. 10. 28. 『농림사업실시규정』으로 개칭)
- 한편, 지난 2년간의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의 추진실태를 중간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었으며
 - WTO 개방체제하에서도 농림업은 전망있는 산업이라는 확신과 자신감을 갖게되고
 - '96. 1. 농림어업인 의식조사 결과 농어촌의 미래가 희망적(80%)이고, 수입개방에 대응할 자신감(63%)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어촌에 대한 지원약속이 이행되어 농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음
 - 농가경영규모 및 인력구조의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남
 -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한 농업생산기반정비로 안전영농 및 기계화 경영기반이 구축되어 농업생산성이 향상됨

- 농산물의 고급화와 새로운 유통거점의 확산으로 혁신적인 유통구조가 가동되고, 본격적인 농업의 2, 3차 복합산업화가 촉진됨
 - 안전농산물 생산, 수출단지조성 등 농산물 수출진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출액이 급신장하고 수출시장도 다변화됨
 - 농가경제와 생활여건이 꾸준히 개선되고, 농업의 비전을 제시하여 이농이 줄고 능력있는 비농업인이 농업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함
-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96. 6. 14.에는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의 보완과제를 마련하여 농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 첨단기술에 의한 본격적 수출농업의 실현 및 획기적인 환경농업 기술개발
 - 선진 농어업을 주도할 전문경영체 육성 및 지원
 - 농수산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
 - 투자효율 극대화를 위한 투융자 제도의 개편

※ 농정의 변화추세

구 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이전(1992년까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이후(1992-1994.5)	농어촌발전대책 이후(1994.6.이후)
농정기조	식량증산	구조개선	개방
농정목표	식량증산	구조개선	구조개선 및 국제경쟁력 강화
법령·제도	농업 보호조치	개방에 대비한 농업보호	개방하의 경쟁체제
농정운영주체	정부	정부	정부, 생산자단체, 민간

2. 특징

< 기 본 방 향 >

- 농정의 총체적인 모습을 제시하여 정책방향과 부합되는 농정수행
- 농림사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참여기회 확대 및 자조역량 제고
- 상향식 농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
- 농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농업인들의 불편사항 해소

가. 농림사업의 종합안내

-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관 사업을 망라한 사업시행지침서를 시군구 및 읍면동, 농촌지도소, 농·축·임·삼협 등 안내기관에 비치하여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안내기관은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농업인들의 사업선택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상담·지도

나. 농림사업 신청 및 지원절차의 정형화·공개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 사업의 신청과 예산의 계상,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정부가 지원한 시설등의 사후관리에 대한 통일된 원칙 제시
- 사업신청요령을 공고하여 공정한 참여기회 부여
- 자금지원대상자 선정과정을 공개함으로써 농정의 투명성 확보
 - 사업대상자 선정은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하므로
 - 누가, 어떤사업을, 어떤과정을 거쳐, 얼마의 지원을 받는지가 공개됨

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농업인들의 자조역량 향상

-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 신청자격, 지원규모, 지원조건, 지원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농업인들이 연중 사업을 구상하고 시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군등에 정부의 자금지원을 신청하면 시군 및 시도가 지역실정에 밝은 농어촌발전심의회에 공개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상향식 농정체제로 전환**함

라. 경영장부의 기록·유지

- 농업인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그 사업에 대한 「경영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사업의 경영상태를 스스로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함

마. 사후관리

-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은 시설등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치하고 관리책임자 지정

3. 보완사항

가. 방 향

- 혼시적 또는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막연하거나 현실성이 없는 내용은 실현가능한 범위내에서 구체화
- 현장중심의 각계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현장감 있는 농정실현 유도
- 품목위주의 분류 및 유사사업 통폐합

나. 주요보완내용

① 사업분류체계의 정비 및 유사사업의 통폐합

- 사업분류를 원칙적으로 정부예산과목 분류에 따름
 - 대분류는 농업인등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능위주에서 품목위주로 전환
 - 가능한한 모든 대분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중분류 항목 설정
 - 소분류(단위사업)는 정부예산과목의 “세항”을 기준으로 설정하되 “세항” 내에 “자율” 및 “공공”이 혼합된 경우는 이를 각각의 단위사업으로 분리함

<분류표>

- 대분류(5개)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농업(원예특용작물)구조개선, 축산업구조개선, 농촌개발, 임업및산촌구조개선
- 중분류(11개)	- 공통(8개) : 생산기반확충, 농업기계화, 생산및유통개선, 기술개발및정보화, 인력육성, 소득원개발, 생활환경개선, 기타사업 * 생산기반확충은 대분류별 특성에 따라 명칭중 일부를 변경사용 가능 - 특별(3개) : 가축개량, 환경임업육성, 산림자원조성
- 소분류(134개) (자율39,공공95)	- 정부예산과목의 “세항” 기준

- 단위사업수를 148개에서 134개로 축소함

②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신청요령 등을 공고할 사업의 범위 구체화

- 농림사업의 목록을 훈령에 명시하고 훈령에 근거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함
 - 수입 및 구매비축
 - 일시적인 조사연구
 - 단체 등에 지원하는 운영비(특정목적의 시설비 제외)
 -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업
 - 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
 - 기관운영·차액보상·이차보전 등 사업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 공고대상사업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신청요령 등을 공고한 후 사업실시
 - 공고문의 형식은 시도지사가 정함

③ 농림사업심의위원회 운영방법의 개선

- 위원회의 기능의 구체화
 - 자율사업을 공공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 사업시행지침중 신청의 자격·절차·구비서류의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의 기준·우선순위·절차의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 신규사업의 선정 및 그 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 기타 농림사업 추진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사항 구체화

④ 사업신청요령 등의 공고시기 및 사업신청 기한의 조정

- 농림부는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 20.까지 사업시행지침(다음년도의 사업신청요령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포함)을 시군등 관계기관에 통지
 -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는 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여 전년도 9. 30.까지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제출
- 시군등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상 공고
- 사업의 신청은 자율사업 및 공공사업 구별없이 전년도 1. 20.(‘98년 사업은 ’97. 1. 31.)까지 신청서 제출
 - 시군등의 심사기간을 10일 연장하는 효과
 - 공공사업의 경우는 현실에 맞게 신청기한 조정

⑤ 사업신청서의 심사방법 개선

- 사업성검토 및 신용조사 대상금액을 3천만원(농업인후계자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은 2천만원)이상으로 함
 - 사업성검토기관 : 산림청 소관 사업은 임협조합, 기타사업은 농촌지도소
- 시장군수등이 사업신청서 심사시 3천만원(농업인후계자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은 2천만원)이상인 경우 농·축·임·삼협과 합동실무검토반을 구성·운영하도록 함

⑥ 농어촌발전심의회 사업신청서 등 심의방법 개선

- 시군 농발심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는 분과위원회(품목별 소분과위원회 포함) 심의를 시군 농발심의회 심의로 같음함(반드시 회의를 소집하여 공개적으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서면심의를 못하게 함)
- 시군 농발심의회에 법정 최대인원의 생산자단체장 및 농림어업인 대표(생산자단체장 10인, 농림어업인 대표 14인)가 참여하도록 유도함
- 지원신청금액이 20억원이상인 대형사업으로서 시장군수등의 요청이 있으면 시도지사는 그가 지정하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도 농발심의회에서 직접심의하도록 함
- 농발심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자치구 및 서울시·광역시 등의 경우는 자체 심의기구를 농발심의회로 같음

7]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개선

- 신규사업 선정요구에 있어 요구기한의 제한을 없애는 대신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농림사업심의위원회 개최일정을 2, 4, 7, 9월의 마지막 주로 정례화(1월내 에서 연기 가능)
 - 2월, 4월 개최는 다음년도 예산요구 일정 감안
 - 7월, 9월 개최는 다음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와 당년도 사업시행 여건변화를 수용하는 차원
- 농림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신규사업안은 위원회 개최전 5일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고, 사업시행지침안을 함께 심의

8] 사업시행지침 서식의 정형화

- 사업시행지침 서식을 훈령 별표로 정하고 서식 앞부분에 작성요령을 상세히 언급함
 - 사업실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상세히 작성
 - 단위사업명에 자율·공공을 구분하여 병행 기재
 - 구체적인 내용을 요점적으로 정리
 -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시 법인경영체 자격강화요건 열거
- 관계기관 직원 및 농업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을 명시하고, 사업예정년도의 사업목적·추진방향·지원근거법령·연도별·지원계획·사업개요·추진체계, 다음년도의 사업신청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함
 - 법인경영체의 사업참여 자격기준 강화
 - 농업인등보다 생산자단체등을 우대하지 못하게 함
 - 신청경쟁이 치열할 경우 강화할 자격요건 기재

9) 기타 보완사항

- 題名을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에서 “농림사업실시규정”으로 변경함
 - 사업이 통합된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 방지

- 시장군수등이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 홍보시는 “예산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자금지원우선순위가 변경되거나 지원예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
 - 일부 농업인등이 예산을 요구만 하면 전액 반영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 사전방지(신뢰성 차원)

- 시장군수등이 정부예산안을 포함한 시도예산안에 따라 시군등의 예산안을 작성하고 자금지원대상자를 정할 때 “영농 또는 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로 자금지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순위 변경가능
 - 종전에는 사업포기, 이농시에만 가능했음

- 읍면을 경유하여 시군등에 제출하던 자율사업신청서를 농업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읍면동 또는 시군등을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1천만원미만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에 대하여는 읍면동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시군등에서 관리하도록 하였음

- 자금집행 및 평가에 관련된 규정 삭제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과 농림사업평가규정에 각각 별도로 정함

4. 해설

제1장 총칙

가. 정의(제2조)

- (1) **농림사업** :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서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는 사업
- (2) **자율사업** : 농업인등, 생산자단체등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세부사업 내용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
 - 농업인등 : 농업인·임업인
 - 생산자단체등
 - 생산자단체(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의2) : 농·축·임·삼 협조합 및 그 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5인이상이 결성한 법인격있는 전문생산자조직
 - 농림사업실시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3) **공공사업** : 공공목적달성을 위하여 정부가 직접시행하는 사업 또는 정부계획과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법인들이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
 - 지정법인등 :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생산자단체등, 비영리법인, 상사법인 등
- (4) **총괄부서** : 농림부, 청(농촌진흥청·산림청), 시도, 시군등(시·군·자치구)에서 이 훈령에 따라 농림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과단위 부서
 - 농림부 : 투자심사담당관실
 - 청 : 기획예산담당관실
 - 시도 : 대체로 농정과
 - 시군등 : 대체로 산업과

(5) 사업부서 : 농림부, 청, 시도, 시군등에서 농림사업의 추진및 실시
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단위 부서

* 사업시행지침상의 해석기관이 이에 해당됨

나. 적용범위 등(제3조)

(1) 농림사업중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구분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하고 이 훈령에 의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등(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사업신청요령 등을 공고함(제3조제2항, 제3조의2 제6항, 제7조)

< 농림사업분류표 적용제외 범위 >

- 농산물 또는 임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수입 및 수매비축
- 정부가 일시적으로 과제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조사연구 (조사연구의 목적이 되는 사업과 연계추진하는 경우 제외)
-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정부가 지정법인등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
- 피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업
- 정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집행하는 사업비
- 기관운영, 차액보상, 이차보전 등 사업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 농업인등과 직접 관계없는 특정업체 또는 단체 등에 특정사업비 (예 : 행사비지원, 시설비지원 등)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농림사업분류표에 포함하여야 하며,

* 농림사업분류표 적용제외 범위에 속하는 사업이라도 농업인등에 대한 정부시책의 홍보 등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는 포함할 수 있음

(2) 농림사업분류표의 내용

○ 대분류(5개)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농업(원예특용작물)구조개선, 축산업구조개선, 농촌개발, 임업및산촌구조개선

○ 중분류(11개)

- 공통(8개) : 생산(사육 또는 경영)기반확충, 농업기계화, 생산 및 유통개선, 기술개발및정보화, 인력육성, 소득원개발, 생활환경개선, 기타 사업
- 특별(3개) : 가축개량, 환경임업육성, 산림자원개발

○ 소분류(단위사업 134개) : 정부예산과목의 “세항”을 기준으로 하되, 기금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과목을 기준으로 함

- 자율사업 39개, 공공사업 95개

다. 사업시행지침 등(제3조의2)

(1) 농림사업분류표에 명시된 사업은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가 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9. 30.까지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제출

- 농림부의 총괄부서는 훈령의 근거가 없더라도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가 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기 전에 사업예정년도에 적용할 농림사업분류표안을 작성하여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에 통지할 수 있음(정부예산안의 윤곽이 드러나는 전년도 8. 31.까지)

○ 사업시행지침의 내용

- 해석기관 명시(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
 - 사업예정년도의 사업시행요령
 - 사업예정년도 다음년도의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 구분

(2) 농림부의 총괄부서는 사업시행지침안을 확정하고 이를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포함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 20.까지 다음의 기관에 통지함

- 농림사업지침서는 총6권으로 함(제1권은 관계규정 해설 등, 제2권 내지 제6권은 농림사업분류표상의 5개 대분류를 각권으로 함)

○ 통지할 기관

- 농림부의 사업부서, 청, 시도
- 농림사업 안내기관(제8조제1항) : 시군구, 읍면동, 농검 시군출장소, 농촌지도소, 농·축·임·삼협조합,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 시군지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

(3) 다음사항은 사업시행지침안을 확정하기 전에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중 다음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농림부의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해야 함

- 자율사업을 공공사업으로 변경
- 사업시행지침중 신청의 자격·절차·구비서류 변경
-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의 기준·우선순위·절차 변경

(4) 농림사업분류표에 정한 사업이외의 사업은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시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지함

라. 농림사업심의위원회(제4조 내지 제4조의6)

(1) 구성(21인)(제4조) : 농림부 차관(위원장), 농림부 기획관리실장(부위원장), 농림부 차관보·농업정책실장·각국장(공보관·감사관·농업통계정보관, 각심의관 포함), 청의 기획관리관, 농·축·임협중앙회의 신용업무외의 업무담당 부회장, 농경연 부회장

(2) 기능(제4조의3)

- 자율사업을 공공사업으로 변경
- 사업시행지침중 신청의 가격·절차·구비서류의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의 기준·우선순위·절차의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 신규사업의 선정 및 그 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 기타 농림사업추진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 회의(제4조의4) : 필요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함. 다만,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경우는 2, 4, 7, 9월의 마지막주중 각 1회에 한함(1월 범위내에서 연기 가능)

- 2, 4월은 예산요구 일정 감안
- 7, 9월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 및 당년도 사업시행 여건변화 수용 차원

(4)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둠 (제4조의6)

- 구성(16인) :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실무위원장), 농림부 투자심사담당관(실무부위원장), 농림부의 국장급 및 청의 기획관리관인 위원소속의 주무과장, 농림부 기획예산담당관

제2장 자율사업

가. 사업신청요령 등의 공고 및 안내(제7조 및 제8조)

- (1)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지체없이 다음사항을 포함한 사업신청요령 등을 30일이상 공고하여야 함(공고문의 형식은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함)(제7조)

- 공고는 시군구, 읍면동, 농촌지도소, 농·축·임·삼협조합, 자연마을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반상회보 등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함
-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공고내용을 읍면동을 통하여 斑까지 문서로 통지함

(2) 안내기관(제8조) : 시군구, 읍면동, 농검 시군출장소, 농촌지도소, 농·축·임·삼협조합,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 시군지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

- 안내기관의 장은 상담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안내 및 상담에 응함 (신청자격 및 절차, 사업계획 작성, 신청자의 기술수준 등, 인·허가 사항, 사업시행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등)

나. 자율사업의 신청절차(제9조 및 제10조)

(1) 신청서 제출기관(제9조) : 원칙적으로 시군등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농촌지도소, 읍면동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하는 기관에도 제출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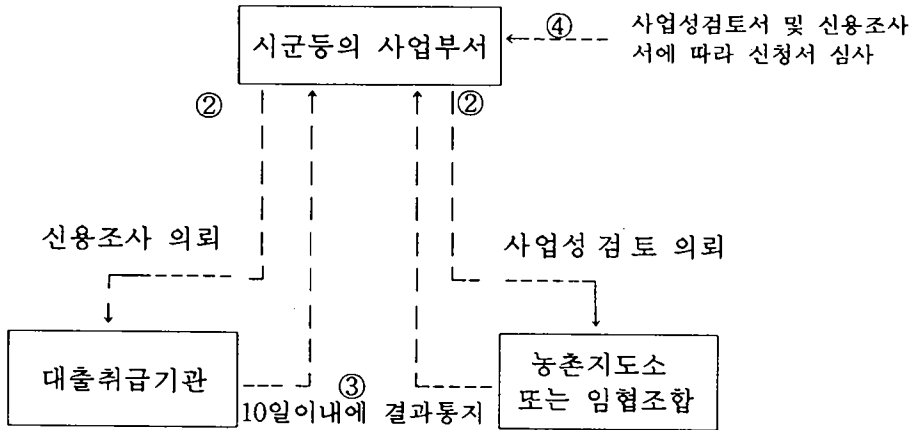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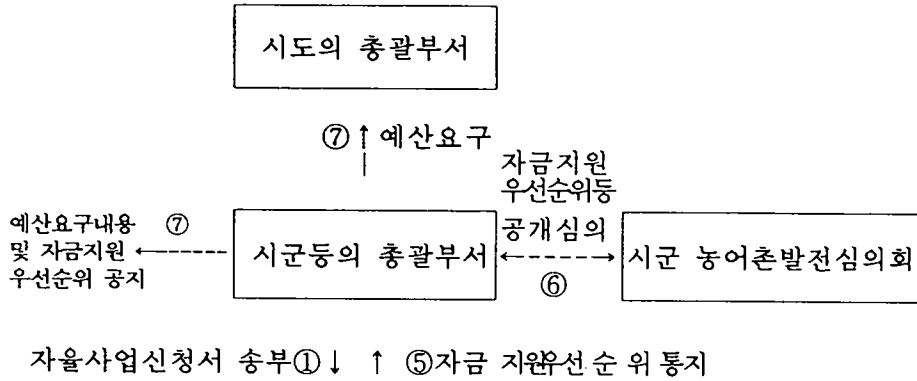
- 농촌지도소장, 읍면동장이 신청서를 제출받을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등에게 송부해야 함
-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하는 기관이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심사 의견서를 붙여 시장군수등에게 송부하여야 함

(2) 다음금액 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는 대출신청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농업인후계자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 : 2천만원
- 기타사업 : 3천만원

(3) 신청기한(제10조) :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 20. (사업예정년도가 1998년인 것은 1997. 1. 31.)

다. 자율사업신청서에 대한 시군등의 심사 및 예산요구(제11조 내지 제16조)



< 업무단계별 설명 >

② 사업성검토(제12조) : 지원신청금액이 3천만원(농업인후계자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은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농촌지도소장이 사업성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읍면동 및 농·축·삼협조합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확인·조사 실시(산림청 소관사업은 임협조합에서 사업성검토)

② 신용조사(제13조) : 대출신청금액이 3천만원(농업인후계자 및 쌀 전업농 지원사업은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함

- ④ 지원신청금액이 3천만원(농업인후계자 및 쌀 전업농 지원사업은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농·축·임·삼협조합직원과 합동실무검토반 구성·운영(제1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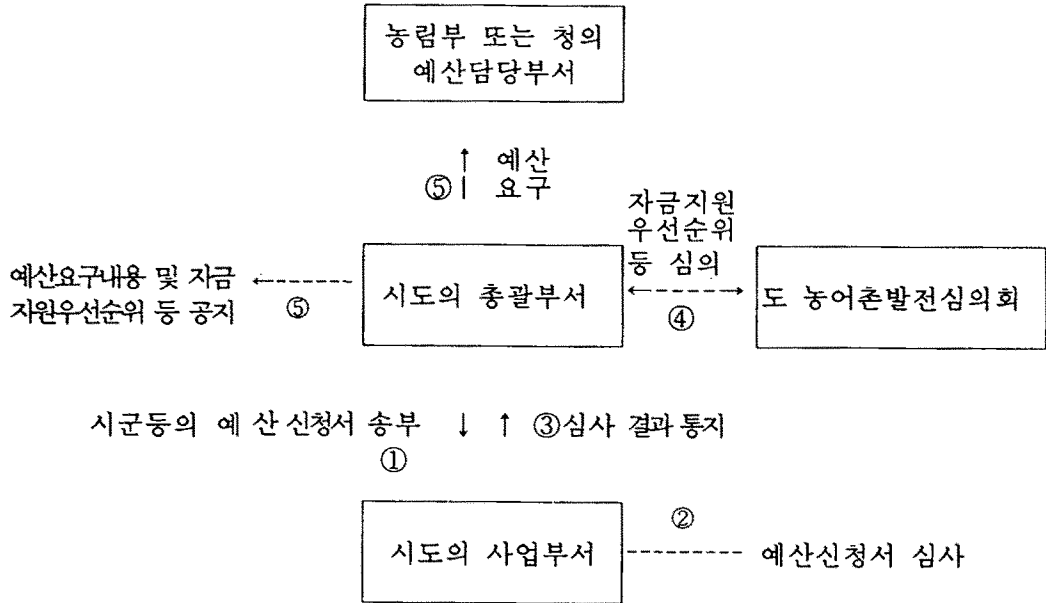
(검토사항)

-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 시군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 전년도 신청자중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에서 탈락된 자 현황
- 시도, 시군등, 농·축·임·삼협조합의 자체 지원계획
- 시군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 전년도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 ⑥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제15조)

-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의결로 정하는 사업은 **분과위원회 또는 품목별 소분과위원회**의 심의로써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로 같음
-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 **법정 최대인원의 생산자단체장 및 농림어업인 대표(생산자단체장 10인, 농림어업인 대표 14인)**가 참여하도록 유도 (미달시는 별도 심의기구 심의를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로 같음)
- 지원신청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시장군수등이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면 시도지사는 전문가(전문기관 포함)를 지정하여 검토하게 한 후 나중에 시군등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와 함께 도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직접심의**하게 함(제17조제3항)
-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등은 **회의를 소집하여 공개적으로 심의**하여야 함(서면심의 불가)

라. 시도의 심사 및 예산요구(제17조)



< 시도의 사업부서가 예산신청서 심사시 검토할 사항 >

-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 시군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 전년도 신청자중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에서 탈락된 자 현황
- 시도, 시군등, 농·축·임·삼협조합의 자체 지원계획
- 시군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 전년도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 도 농어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연차별 자금지원계획
- 농림부 및 청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금지원계획
- 시도 자체 자금지원계획

마. 농림부 또는 청의 심사(제18조)

- (1)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에 송부
- (2)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시도, 시군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조정하여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에 제출

<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예산요구서 심사시 검토할 사항 >

- 시군 농어촌발전계획 및 시군 농지이용계획에 반영여부
-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 연계성
- 점검·평가 결과
- 정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여부

바. 정부예산안의 통지(제19조)

- (1) 농림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0. 15.까지 시도, 시군등별 정부예산안 배분계획을 시도에 통지
- (2) 시도지사는 정부예산안에 따라 시도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등에 배분하고 이를 전년도 11. 15.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
- (3) 시장군수등은 시군등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 15.까지 사업별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
 - 사업포기, 업종변경, 영농 또는 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시 자금지원대상자우선순위 변경가능

사. 정부예산 배분계획의 확정(제20조 내지 제23조)

- (1) 농림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정부예산(각종 기금운용계획 포함)이 확정되면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정부예산 배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시도에 통지(제20조)

* 정부예산 확정기한 :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 2.

- (2) 시도지사는 시군등에 대한 시도예산의 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 31.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제21조)

- (3)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사업예정년도의 1. 15.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 지원대상자를 확정(부득이한 경우 우선순위 변경 가능)하여 이를 자금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자금지원대상자명단을 시군구 및 농협조합의 홍보지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함(제22조, 제23조)

<자금지원대상자우선순위 변경 사유>

- 시군 농발심의회를 거쳐 이미 결정된 우선순위의 차순위자
- 사업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새로 신청받아 그중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자

<공지시 추가할 사항>

- 시군구 관할구역의 농·축·임·삼협조합, 농지개발조합, 농어촌진흥공사 지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도 함께 공지.

아. 경영장부의 기록 및 비치(제24조)

- (1) 시장군수등은 정부로부터 3천만원(농업인후계자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은 2천만원)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경영장부를 기록·비치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하게하여야 함
- (2) 위 금액미만으로서 1천 5백만원이상을 지원받은 자는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함

제3장 공공사업

가. 공공사업의 신청(제25조 내지 제27조)

- (1)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등 또는 시도의 총괄부서, 공공사업주관자에게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 20.(사업예정년도가 1998년인 경우는 1. 31.,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하는 날)까지 신청(제25조제1항 및 제4항)
 - 공공사업주관자 :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공공사업의 추진 및 실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

(2)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의견서와 함께 시도에 송부(제25조제3항)

(3) 시도지사 또는 공공사업주관자는 심사의견을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3. 31.까지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제26조제1항)

(4)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은 심사의견을 검토하여 필요시 예산에 반영함(국고는 재정경제원에 요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반영)(제26조제2항)

<검토할 사항 : 제2장-마-(2) 참조>

(5)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은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예정년도의 1. 15.까지 자금지원대상자 및 사업시행지구를 확정하여 시도지사 또는 공공사업주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제27조)

나. 다음사항은 자율사업의 관계규정을 준용함(제28조)

- 사업신청요령 등의 공고 및 안내
- 신청서식
- 신청서 심사 및 예산요구 절차
- 정부예산안 통지 및 정부예산 배분계획의 확정

제4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가. 신규사업의 제안(제29조)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음

- 시장군수등이 제안하고자 할 경우 시군 농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를 통하여 제안

- (2) 농업인등 또는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 (3) 중앙의 계통조직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등은 그의 중앙조직의 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하고, 그 중앙조직의 장은 타당성을 분석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음

나. 신규사업의 선정요구(제30조)

- (1)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거나 제안이 있을 때에는 타당성을 분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지침안을 붙여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선정 요구

* 청의 소관사항은 자체 정책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요구

- (2)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월이내에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 신규사업의 선정(제31조)

- (1) 농림부의 총괄부서는 2, 4, 7, 9월의 마지막 주중에 농림사업심의 위원회를 거쳐 신규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업시행지침을 확정함(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1월 연기가능)

- (2) 사업의 성격상 긴급성이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농림부의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음

-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신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농어촌발전계획수정보완지침에 따라 도 및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함

제5장 보칙(제3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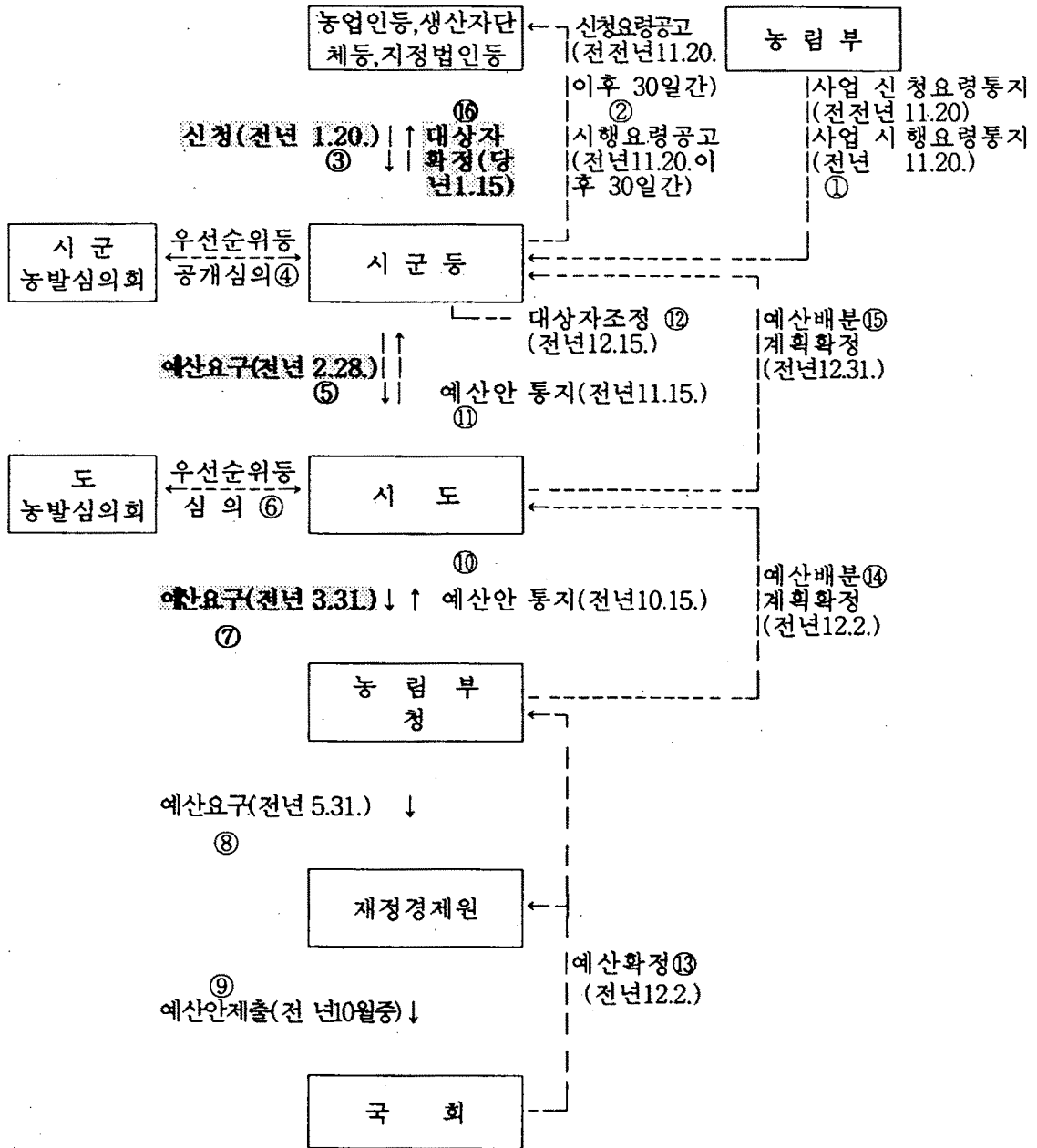
- 가. 농림사업에 대한 관리책임은 시장군수등에게 있음. 다만 공공사업 주관자에게 신청한 공공사업은 당해 공공사업주관자에게 1차 관리책임이 있음
- 나.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하는 형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 * 지원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시설등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당해 읍면동에 관리대장을 비치하게 할 수 있음
- 다. 시설등에는 농림사업안내표지를 잘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함
- 라.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마련시행해야 함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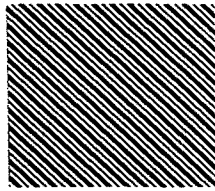
- 가. 시행일
 - 이 훈령은 발령한 날('96. 10. 28.)부터 시행하되, 농림사업분류표는 '97. 1. 1.부터 시행함(제1항)
 - 농림사업분류표에 포함된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지침의 작성은 '97. 1. 1 전에 시행할 수 있음(제2항)
- 나. 농림수산사업지침심의위원회운영세칙은 폐지함(제3항)

[별표]

농림사업 신청 및 지원 절차도



Ⅱ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해설



여 백

1. 배경

- 다양한 농림사업자금을 집행관리하는데 따른 통일된 기준이나 원칙이 없어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례라도 각 사업자금별로 처리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 농림사업자금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

2. 농림사업자금 현황

명 칭	'97예산안 규 모	관 련 규 정
◦ 일반회계	15,341 억원	◦ 국고보조금집행요령
◦ 농특회계	55,613	◦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 ◦ 국고보조금집행요령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17,900	◦ 농수산물가격안정및유통개선사업실 시요령 - 제2장 기금운용관리
◦ 농지관리기금	11,176	◦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요령
◦ 산림개발기금	479	◦ 산림개발기금융자지침
◦ 축산발전기금	9,520	◦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
◦ 농업경영자금	29,500	◦ 농업경영자금운용요령
◦ 축산경영자금	5,200	◦ 사업시행지침
계	144,730	

(주) ◦ 일반회계금액은 순수한 투자재원임

- 농업인등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양특회계, 양곡증권정리기금, 종자기금등은 생략함

3. 주요골자

① 용자관련 용어의 통일

- 취급단계에 따라 대여, 재대여, 대출로 통일하고, 이를 총칭하는 용어로서 “용자”를 사용함

②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강화

- 부당사용금액의 크기 또는 사업비에 대한 부당사용금액의 비율에 따라 4개의 제재기준으로 구분함
 - 10억원이상 50%이상 : 5년간 지원안함(50%이상 금액이 1억원미만일 경우는 3년)
 - 5-10억원미만 30-50%미만 : 3년
 - 1-5억원미만 20-30%미만 : 2년
 - 1억원미만 20%미만 : 1년
- * 2년이상의 경우 기여도 또는 정황에 따라 개별규정에서 50%단축 가능
- * 2이상에 해당될 경우는 그중 무거운 것을 적용

③ 자부담금 우선 집행후 사업자금 지원

-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시군동이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비율에 따라 사업자금 집행
 - 자부담금 비율이 사업비의 20%이상이고 금액이 2억원이상일 때는 착수시와 진척 50%시에 자부담금을 각각 반액씩 집행
 - 기타의 경우는 착수시에 자부담금 전액 집행

④ 대출실행전 대여금 및 반납금에 적용하는 이자율 조정

- 대여금 반납시의 적용이자율을 농축임·삼협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통일하고, 대출실행전 대여금에 대한 적용이자율을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범위안에서 개별규정에 정하도록 함

⑤ 사업추진 실적과 연계한 자금 집행

- 대여시기를 농업인등에게 지원할 금액 확정시기 이후로 조정
- 용자종결기한을 폐지하는 대신 대출불가능한 대여금 매분기 반납제 신설
- 여신관리계좌 입금시기를 사업착수 가능 시점으로 조정하고 매 3월마다 지급 실적을 확인하며
- 운용기한을 다음 회계년도말까지만 인정

⑥ 대출금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매 1년마다 납부함

4. 해설

< 일 러 두 기 >

- 이 훈령은 농림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 이 훈령의 위임을 받은 사항 또는 이 훈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훈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별규정이나 사업시행지침에 상세하게 정할 수 있으므로
- 실무에 있어서는 사업자금별로 개별규정이나 사업시행지침을 받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개별규정의 내용이 이 훈령에 어긋나는 경우는 이 훈령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음

가. 정의(제2조)

○ 사업자금

-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국고, 기금, 자금,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이 직접 집행관리하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감독 권한이 있는 것

[예] 국고(일반회계, 농특회계), 농안기금, 농지관리기금, 산림개발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업경영자금, 축산경영자금

○ 지원대상자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임업인(농업인 등), 농업인등의 협동조직, 농림업과 관련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사업자금의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

○ 집행관리

- 지원에 따른 자금한도액의 배정,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의 결정, 수표의 발행, 지급, 대여금 및 그 이자의 수납 등 행위를 하거나 그에 관한 세부 사무처리 절차 및 사후관리 지침 등을 작성하는 것

○ 사업자금관리자

-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아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

[예] 농특회계(유자 : 농협중앙회 농특사무국), 농지관리기금(농어촌진흥공사 기금관리처), 축발기금(축협중앙회 기금관리부)

○ 사업자금과

- 농림부 또는 청의 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

[예] 농특회계(유자업무 : 농업금융과, 자금한도액 배정 및 보조업무 : 총무과), 농안기금(유통관리과), 농지관리기금(농지관리과), 축산발전기금(축산정책과), 농업경영자금(농업금융과), 축산경영자금(축산정책과)

○ 사업지원과

- 농림부 또는 청의 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

○ 사업주관기관

- 지원대상자의 선정, 사업비의 지원 또는 지원결정(자금한도액 범위안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금액을 확정하는 행위 포함), 사업실적의 확인, 지원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원칙적으로 농림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그 산하관서, 시도, 시군자치구중 하나를 말함)

○ 개별규정

-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외에 개별적으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제외한 것

나. 다른규정과 의 관계(제3조)

-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이 이 훈령에 위배되는 때에는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은 이 훈령의 범위안에서만 효력을 가짐
 - 개별규정은 이 규정시행일까지 이 규정에 맞게 개정

다. 집행의 원칙(제4조)

- 사업자금은 그 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 개별규정, 사업시행지침 또는 예산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에 대출취급기관 또는 보조금집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매 분기말 기준으로 사업자금의 지원비율을 일치시켜 집행하게 하여야 함. 그러나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예치하게 할 수는 없음('97.예산부터 적용)

- 자부담비율이 20%이상이고 금액이 2억원이상일 경우는 사업착수시 및 50%공정시부터 각각 반액씩 집행하고
- 그외의 경우는 착수시부터 전액 집행
- * 자부담을 안하고도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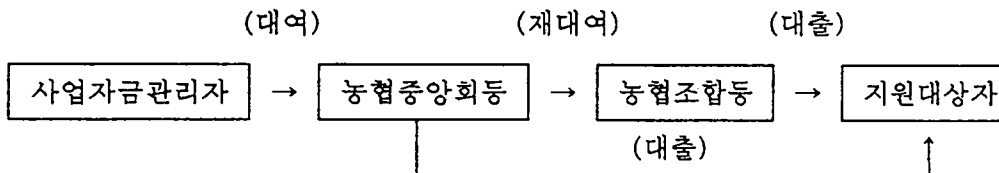
라. 이월(제5조)

- 당해 회계년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부득이 지출하지 못한 사업자금은 사업자금의 예산을 담당하는 과가 사업지원과의 신청을 받아 이를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할 수 있음
 - 이월은 다음 회계년도 1월 30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함
 - 이월한 사업자금은 다시 이월할 수 없음

마. 용자의 절차(제6조 내지 제1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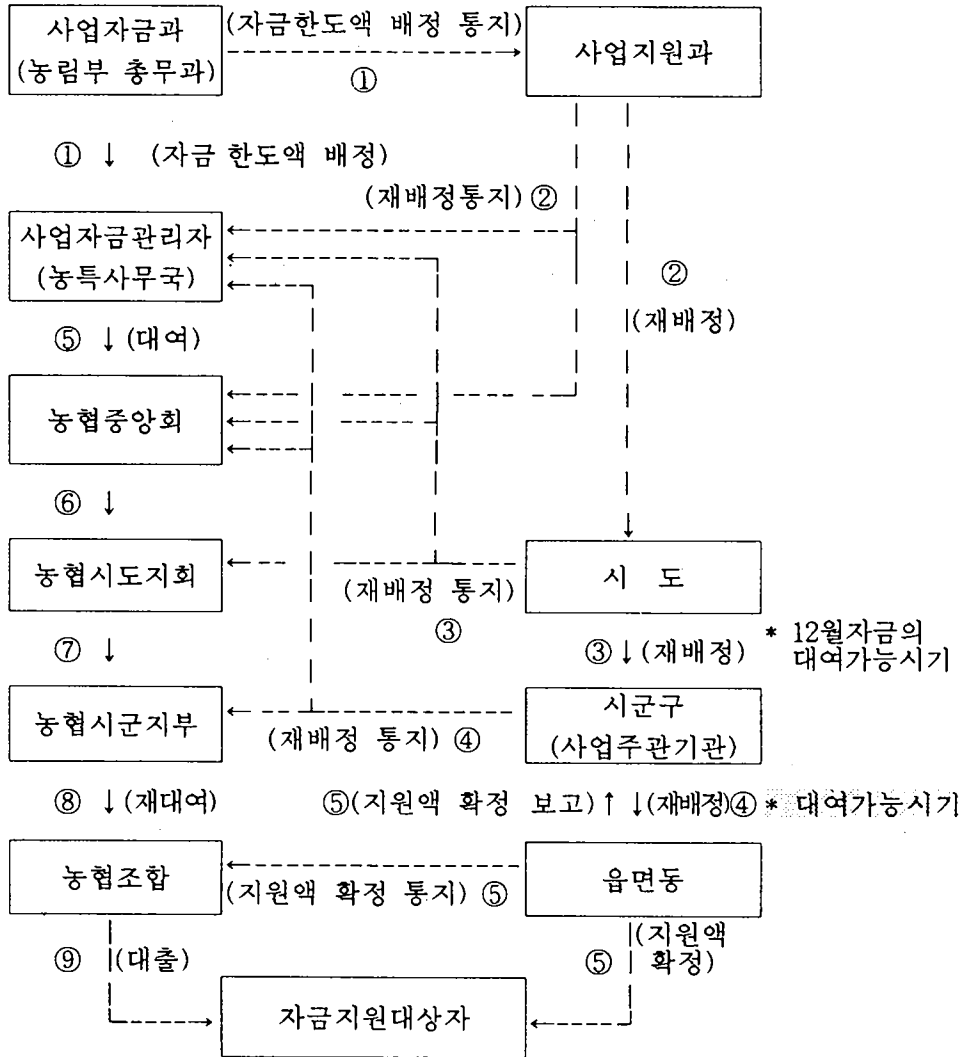
- 지원조건은 사업자금과가 이를 결정 및 변경함(제6조)
 - 지원대상자의 대출기간 연장 요구에 따른 용자조건의 변경은 사업지원과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에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별규정에 따로 정하는 경우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자금과의 의견을 받아 직접처리 가능
 - * 이 경우 사업자금과와 합의하였다는 뜻을 당해문서에 기재해야 함
- 지원대상자의 대출기간 연장요구에 따라 용자조건을 변경할 경우, 1건으로는 세입의 0.5% 연간누계로는 세입의 3%이상 차질예상시는 사업자금과가 세입담당과와 사전 협의해야 함

○ 용자의 방법(제7조)



○ **대여시기(제8조제1항)** : 사업추진실적과 관계없이 사업자금이 미리 집행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여시기를 정함(구체적인 시기는 개별규정에 정함)

- 자율사업의 경우는 다음 그림중 **역상표시** 때이후 대여 실행(농특회 계자금을 농협이 취급하는 사례임)



* 위 표는 이 훈령의 규정에 의한 융자절차를 개념적으로 정리한 흐름도인 바, 세부적인 절차는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음

- 기타 사업은 자금한도액 범위안에서 사업주관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금액을 확정된 때이후 대여실행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실적을 확인받아 대출실행 (사업성격상 사업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사업시행 지침에 정한 경우 제외) (제8조제2항 내지 제3항)

- 농협중앙회등이 지원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비등(1천만원의 범위내에서 개별규정에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시설비등에 한함)의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실적을 확인받지 아니하고 일시에 전액을 여신관리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출실행 가능

* 1천만원이하의 시설비등은 여신관리계좌에 입금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면 사업실적 확인없이 대출실행 가능

- 농협중앙회등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여신관리계좌에 준하여 개별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름

○ 대출불가능한 대여금의 반납(제10조)

- 농협중앙회등은 매 분기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출하지 아니한 대여금 중 지원대상자의 사업포기 또는 담보물 부족 등의 사유로 재대여 또는 대출할 수 없는 금액이 생긴 때와 예산에 계상된 연도의 다음년도말까지 대출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함

· 종전의 음자종결기한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폐지하는 대신(부칙 제4항) 매분기말 반납제로 전환

·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반납하고자 하는 금액에 대여일부터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함

· 농협중앙회등이 재대여 또는 대출할 수 없는 금액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매분기말까지 사업주관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확인 내용을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여야 함

○ 대출금의 이자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함(제11조제3항)

- 다음의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 납부주기를 1년의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음

· 금융기관외의 기관이 대출취급한 경우

· 지원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바. 여신관리계좌의 운용(제12조)

○ 여신관리계좌 입금 시기

- 사업 대상 부지의 확보,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의 취득, 설계완료(건축 공사가 있는 경우는 건축허가 포함), 공사, 구매, 기타 사업시행과 관련된 계약의 체결 등 사업착수가 실제로 가능한 시점
- 입금시는 반드시 월별 공정계획(공정에 따른 소요금액 포함)을 제출받아야 함
 - * 지원대상자가 농업인등으로서 사업시행기간이 6월이하이고 대출금액이 2억원이하인 경우는 월별 공정계획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여신관리계좌 입금후의 지급

- 대출취급기관은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월별 공정계획을 참작하고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실적을 확인받아 지급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지급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이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진척을 확인하고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에 따라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지원과에 통지 하여야 함
 - 사업을 포기하였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는 미지급액을 농협중앙회등을 거쳐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할 것
 - 단순히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는 그동안의 여건변동 사항을 고려한 새로운 공정계획을 지원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그에 따라 미지급액을 지급하도록 할것
-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은 예산에 계상된 연도의 다음년도말을 경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97예산부터 적용 : 부칙 제1항)
 - * 재이월 불가원칙과 균형유지 차원

사. 보조금의 집행(제13조)

- 보조금은 정산지급을 원칙으로 함
 - 사업의 성격상 실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는 개산지급후 정산할 수 있음
-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시 붙여야 할 조건
 -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사업을 다른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조금집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
 -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보조금집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
 - 부당사용으로 제재대상이 될 경우는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보조금집행자에게 반환하게 한다는 사항
 -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원과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간중 그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보조금집행자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항
- * 기타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이나 사업지원과 또는 보조금집행자가 조건을 추가할 수 있음
- 보조금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함

아. 제재(제14조 내지 제18조) : '96. 8. 1.이후 확인분부터 적용

○ **부당사용한 대출금의 회수(제14조)**

<부당사용사유>

- 대출금(보조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농림업외의 용도(농림업 관련분야 사용목적 지원시는 지원목적외 용도. 이하 같음.)에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한 때
 -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업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때
 -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 지원후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위의 사유로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통지가 있을 때
- * 대출취급기관이 위 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고 대출금 회수

○ **부당사용한 대여금 및 보조금의 반납(제15조)**

- 농협중앙회등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부당사용한 대출금의 회수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다음의 시기에 지체없이 당해 대출금 상당의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이 여신관계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부당사용사유**를 통지받은 날
 - 기타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이 **회수한 날**(대출금이 회수되기전에 약정상 대여금 회수일이 도래하는 경우는 약정상의 대여금 회수일)

- 농협중앙회등이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의 기간에 대하여 연체 대출이자를 함께 납부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이 여신관계규정에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한때는 통지서 접수일부터 반납일 전일까지
 - 기타의 경우는 대출금 회수일부터 반납일 전일까지
- 보조금집행자는 보조금의 사용실태를 매분기기별로 확인하여 부당 사용사유 발견시 보조금 반납

○ 지원의 제한(1년미만 대출금은 개별규정에 정할 수 있음) (제16조 및 제17조)

- 반납사유 발생시는 일정기간 사업자금을 지원 안함

사 유	지원제한기간
① 반납할 금액이 10억원이상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반납할 금액의 비율이 50%이상인 때	5년(비율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
② 반납할 금액이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반납할 금액의 비율이 30% 이상 50%미만인 때	3년
③ 반납할 금액이 1억원이상 5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반납할 금액의 비율이 20%이상 30%미만인 때	2년
④ 반납할 금액이 1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반납할 금액의 비율이 20%미만인 때	1년

- *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기여도나 정황 등을 참작하여 50%이내 기간 단축 가능
- * 2이상에 해당될 경우는 그중 무거운 것을 적용
- * 농업인등의 협동조직(법인제외)의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을 1인으로 봄
- * 협동조직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협동조직에 영향이 없음
- * 통합실시요령 및 평가실시요령의 제재 관련규정은 폐지함(부칙 제2항 및 제3항)

- 지원않는 기간의 기산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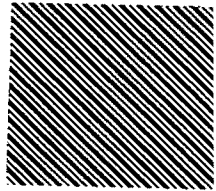
- 대출금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의 통지서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도달된 날
 - 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집행자가 회수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날
- 사업자금관리자 또는 보조금집행자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제한기간을 확정할 때에는 당해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제재내용, 제재 개시 및 종료 년월일, 제재사유 등을 당해인, 사업자금과, 사업총괄과, 사업주관기관, 농협중앙회등, 대출취급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농·축·임·삼협조합(법인연합회 포함) 및 그 중앙회, 정부투자기관, 농지개량조합 및 그 연합회 등은 지원액을 회수하거나 지원제한기간중에도 정부사업 대행 가능(제18조)
 - 정부사업 : 손익이 사업자금에 귀속되는 경우,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 공공성이 강하여 정부가 시행하지 않으면 관련분야 발전에 심한 지장이 있다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

자. 시행일(부칙)

- '96. 8. 1.부터 시행
- 지원대상자의 대출기간 연장요구에 의한 융자조건 변경과 통합실시요령 및 평가실시요령의 제재규정 폐지 규정은 이 훈령 발령일('96. 6. 13.)부터 적용
- 제재규정은 '96. 8. 1.이후 확인분부터 적용
- 자부담금 우선집행, 자부담금 사전예치제 폐지, 여신관리계좌 운용기한 제한규정은 '97년예산부터 적용

여 백

Ⅲ. 시 책 안 내



여 백

1. 42조원 지원계획('92-'98)

가. 총괄

합 계	정부지원	지방비	자부담
42조원 (100%)	35 (83)	4 (10)	3 (7)

나. 정부지원

< 분야별 >

(단위 : 억원)

분야	합계	실 적			계 획		
		계	'92-'95	'96	계	'97	'98
계	353,977 (100%)	208,724	151,114	57,610	145,253	66,920 (100)	78,333
경쟁력 강 화	318,947 (90)	188,374 (90)	137,278	51,096	130,573	60,221 (90)	70,352
농어촌 활력화	35,030 (10)	20,350 (10)	13,836	6,514	14,680	6,699 (10)	7,981

< 재원별 >

(단위 : 억원)

분야	합계	실 적			계 획		
		계	'92-'95	'96	계	'97	'98
계	353,977	208,724	151,114	57,610	145,253	66,920	78,333
국 고	326,377	186,854	134,244	52,610	139,523	61,920	77,333
축발기금	27,600	21,600	166,000	5,000	6,000	5,000	1,000

* 국고에는 농지관리기금, 산림개발기금 등 국가관리기금이 포함됨

다. 연차별 정부지원 실적 및 계획(42조원 지원계획 관련)

(단위 : 억원)

사 업 명	합 계	'92-'95	'96	'97예산(안)	'98계획
1. 생산기반정비	86,063	34,852	15,337	21,397	14,477
2. 농업기계화	30,720	13,759	4,457	4,518	7,986
3. 시설현대화	17,699	6,522	3,418	3,105	4,654
4. 기술개발	12,226	5,219	1,825	2,044	3,138
5. 정예인력육성	23,576	10,820	4,083	4,463	4,210
6. 농외소득원개발	24,682	10,172	5,291	5,554	3,665
7. 축산업구조개선	55,053	24,067	7,084	6,923	16,979
8. 유통개선	22,477	9,020	3,847	4,478	5,132
9. 영농규모화	25,408	12,724	3,375	3,808	5,501
10. 생활환경개선	10,348	3,664	1,523	1,602	3,559
11. 어업구조개선	24,225	10,415	3,930	4,713	5,167
12. 임업구조개선	21,500	9,880	3,440	4,315	3,865
합 계	353,977	151,114	57,610	66,920	78,333

2. 농어촌특별세사업 지원계획

가. 지원방향

- 경쟁력강화에 중점 지원하되, 생활여건개선 및 복지증진에도 균형있게 배분
- 국민성금적 성격을 감안하여 「농어촌발전위원회」의 건의 등을 최대한 수용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함
- 농어촌특별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를 설치운영
 - 농어촌특별세사업중 경쟁력강화 사업의 경우는 기존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조화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전입금계정에 전입후 집행

나. 분야별 지원계획

(단위 : 억원)

분야	분야별	지원액	대 상 사 업
합 계		150,000 (100%)	
농 어 업 경쟁력강화	계	90,775 (60.5)	
	- 경쟁력제고사업	52,540	경지재정리, 기술개발, 기술전문대학지원, 중소농지원
	- 농어민숙원사업	23,685	어항건설, 신용보증기금, 어촌종합개발, 임도건설
	- 유통개혁사업	14,550	유통시설지원(물류센터, 포장센터 등)
농어촌생활 환경개선	계	41,040 (27.4)	
	- 기초생활환경개선	41,040	농어촌생활용수, 도로확충, 하수도, 주택개량 등
농어업인 복지증진	계	18,185 (12.1)	
	- 농어업인복지증진사업	18,185	농어민연금의료서비스수개선, 기본이직업훈련 등

다. 농어촌특별세사업 연차별 지원실적 및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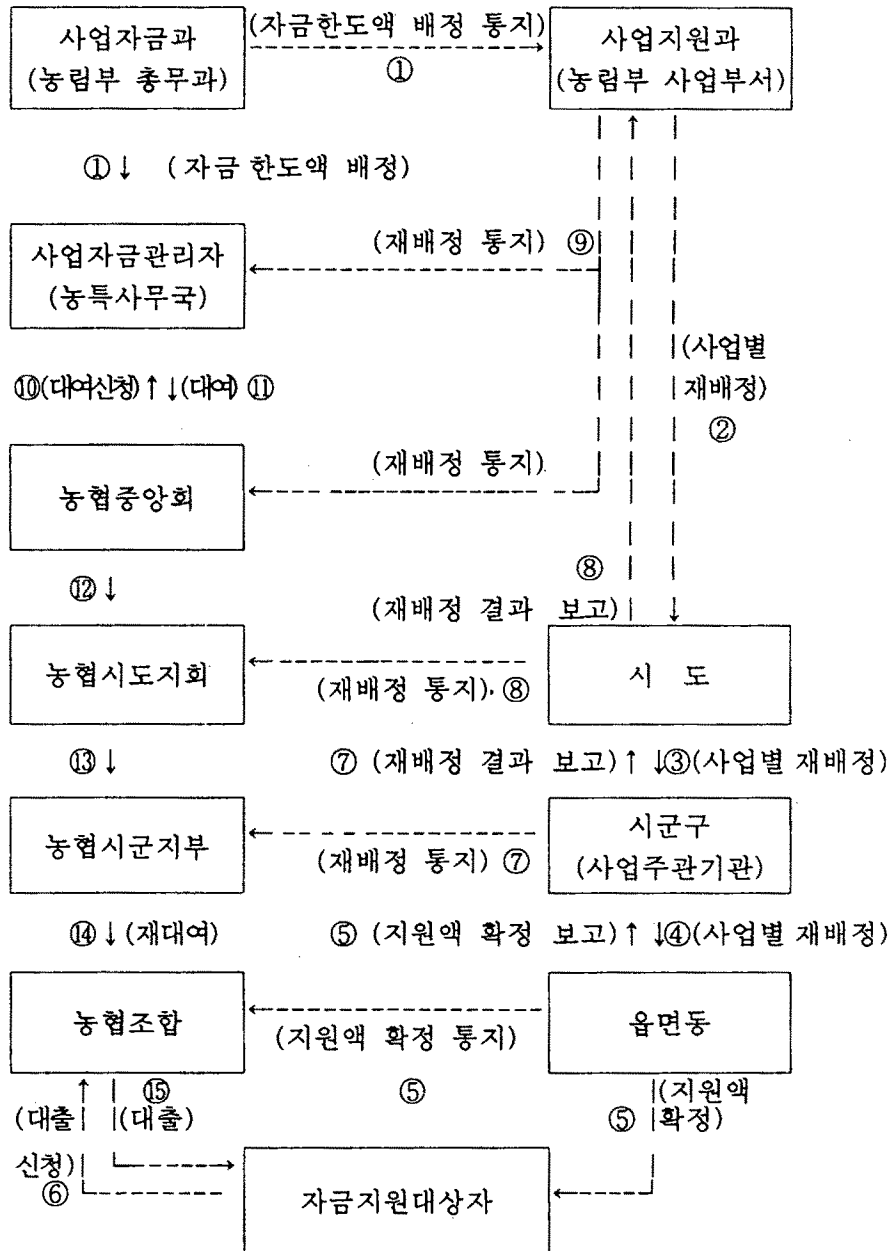
(단위 : 억원)

사 업 명	합계	'94	'95	'96	'97(안)	'98-2004
합 계	150,000 (100.0)	3,480 (100.0)	15,432 (100.0)	15,900 (100.0)	15,000 (100.0)	100,188
1. 농림수산업경쟁력강화	90,775 (60.5%)	1,670 (48.0%)	9,273 (60.1%)	9,549 (60.1%)	9,043 (60.2%)	61,240
○ 대구획경지재정리	43,000	320	2,931	3,623	3,760	32,366
○ 농수산물유통기반시설 확충	14,550	700	1,870	1,614	1,129	9,237
○ 중소농고품질농업 생산지원	2,000	-	200	200	236	1,364
○ 농신보기금출연	7,000	200	800	700	700	4,600
○ 농림어업기술개발	5,040	150	613	550	510	3,217
○ 기술전문대학육성	2,500	-	425	347	285	1,443
○ 어항건설	7,800	300	1,199	1,271	1,207	3,823
○ 양식어장및어촌종합 개발	5,735	-	569	610	610	3,946
○ 임도건설	3,150	-	666	634	606	1,244
2. 농어촌생활여건개선	41,040 (27.4%)	1,450 (41.7%)	4,225 (27.4%)	4,175 (26.2%)	3,925 (26.2%)	27,265
○ 농어촌도로정비	12,000	650	1,200	1,200	1,000	7,950
○ 농어촌하수도정비	7,000	-	800	750	700	4,750
○ 농어촌주택개량	8,000	400	800	800	800	5,200
○ 농어촌폐기물처리 지원	2,040	-	225	225	225	1,365
○ 농어촌생활용수개발	12,000	400	1,200	1,200	1,200	8,000
3. 농어민복지증진	18,185 (12.1%)	360 (10.3%)	1,934 (12.5%)	2,176 (13.7%)	2,032 (13.5%)	11,683
○ 농어민연금제	8,000	10	455	672	654	6,209
○ 농어촌의료서비스	4,785	200	801	819	748	2,217
○ 농어촌교육지원	2,100	100	350	350	350	950
○ 농어촌출신학생기숙사 건립	360	-	40	60	60	200
○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940	-	100	100	90	650
○ 오지및낙도교통지원	800	50	96	62	62	530
○ 농어민직업훈련	1,200	-	92	113	68	927

3. 농림사업자금 대출안내

가. 대출 절차도

(1) 농특회계자금(농협취급 기준)



나. 대출제도 概觀

(1) 신용대출액

○ 대출한도

- 보증부신용대출 : 2,000만원(무보증신용대출 1,000만원 포함)
- 무보증신용대출 : 1,000만원
- 농업인후계자자금 3,000만원, 농기계구입자금 300만원

○ 연대보증인은 1인을 원칙으로 함

(2) 담보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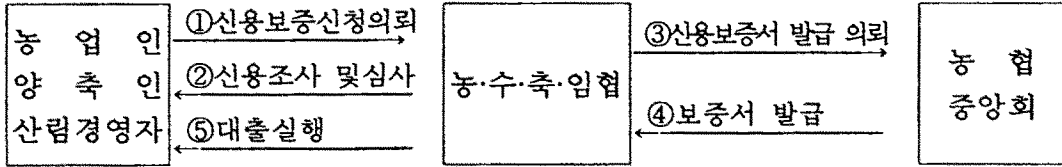
○ 담보종류 및 담보취득비율

취득가능 담보물의 종류	담 보 취 득 비 율
○ 동산	○ 감정평가액의 90%이내(축협은 100%이내)
○ 부동산	○ 감정평가액의 100%이내
○ 유가증권	
- 주식	○ 대용가격의 80%이내(단, 조합은 90% 이내)
- 기타(국채,지방채,사채)	○ 채권액의 90%이내
○ 예·적금(예탁금)	○ 예입액의 90%이내
○ 확정채권	○ 채권액의 90%이내
○ 미확정채권	○ 채권액의 80%이내
○ 공제증권	○ 해지환급금의 90%이내(축협은 80% 이내)
○ 정부의 채무보증서(지방자치단체 포함)	○ 보증금액의 100%이내
○ 금융기관(은행)의 지급보증서	○ 보증금액의 90%이내
○ 신용보증서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보증금액의 100%이내
- 신용보증기금	○ 보증금액의 100%이내
- 기술신용보증기금	○ 보증금액의 100%이내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보증금액의 100%이내
○ 보증보험증권	○ 액면금액의 110분의 100이내
○ 부동산담보 신탁수익권증서	○ 액면금액의 80%이내
○ 선 박	○ 감정평가액의 70%이내(원양선박 40%이내)
○ 어업권	○ 감정평가액의 50% 이내
○ 기타 대출취급기관장이 인정하는 담보물	○ 취득시 따로 정함

(주) 위 담보취득비율중 동산, 부동산은 신용조사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

(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 보증부 대출 취급절차



◦ 심사평점별 보증한도

평 점 별	보 증 한 도			
	농업인등 각종 契		단체 및 법인	
	정책자금	일반자금	정책자금	일반자금
50점이상 ~ 60점미만	1억5천만원	3천만원	3억원	1억원
60점이상 ~ 70점미만	2억5천만원	5천만원	6억원	2억원
70점이상 ~ 80점미만	5억원	1억원	9억원	3억원
80점이상 ~ 90점미만	7억5천만원	1억5천만원	12억원	4억원
90점 이상	10억원	2억원	15억원	5억원

(주) 농업인등 또는 각종 契에 대하여는 3천만원 초과보증시 일정자격의 연대보증인 필요

(4) 후취담보대출 적용기준

담보등급	대 상 담 보 물 종 류	대 출 비 율
갑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 농지, 초지 및 임야 등 부지류 ◦ 주택, 숙박시설, 식당시설 및 판매시설 등 건물류 	◦ 투자금액의 81~ 90%
을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축산물의 가공공장류 ◦ 창고, 저온저장고, 선별처리장 및 집하장 등 창고류 ◦ 기계, 기구 및 장치등 기계류 	◦ 투자금액의 61~ 80%
병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리온실, 철골Pet 온실 등 온실류 ◦ 선박, 어선 등 어로시설류 ◦ 우사, 돈사 및 계사 등 축사류 ◦ 퇴비제조장, 오폐수처리시설 등 종말처리시설류 	◦ 투자금액의 41~ 60%

(주) 이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담보물은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가장 유사한 부류의 후취담보물의 대출비율을 적용한다.

다. 대출취급시 구비서류

구 분	서 류 명	농업인등		개인사업자		법 인		비 고
		신용 대출	담보 대출	신용 대출	담보 대출	신용 대출	담보 대출	
교부서류	◦ 농수축임협 여신거래기본약관	○	○	○	○	○	○	교부서식
대 출 신청시	◦ 대출상담 및 신청서 ◦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서 사본 (사업주관기관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에 한함) ◦ 재무제표(신용조사 생략 시는 제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무서 확인분
신 용 조사시	◦ 사업현황서 ◦ 최근2기 결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 합계잔액시산표 (최근 월말분)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또는 규약	× × × ×	× × × ×	○ ○ ○ ×	○ ○ ○ ×	○ ○ ○ ○	○ ○ ○ ○	세무서 확인 분
담보물 감정시	◦ 담보물건(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서 ◦ 공장의 경우 기계기구목록	× × ×	○ ○ ×	× × ×	○ ○ ○	× × ×	○ ○ ○	
대 출 실행시	◦ 인감증명서	×	○	×	○	○	○	

(주) ◦ 위 구비서류외에 대상업체, 담보물 등에 따라 추가로 받을 서류가 있을 수 있음
 ◦ 대출시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는 반드시 대출취급사무소에 직접 나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관계서류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함
 (단, 대출취급사무소에서 순회 출장의 경우는 예외로 함)

라. 대출에 따른 소요비용

(1) 담보물 감정평가 수수료 :

- 대출취급사무소 자체 평가시 농업인등 및 농업인등의 단체는 전액면제
단, 원격지 담보물의 경우 여비 및 기타 실비는 채무자 부담임
- 한국감정원 등 외부기관 평가시는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2) 저당권 설정비용

- 등록세 : 설정액의 2/1,000(단, 농업인등이 조합에서 대출받는 경우는 면제)
-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단, 농업인등이 조합에서 대출받는 경우는 면제)
- 주택채권 매입 : 설정액의 10/1,000(주택건설촉진법 제 16조)
 - * 설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와 농업인 등이 농림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때에는 주택채권매입이 면제됨(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7조)
- 법무사 수수료(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54조)
 - 기본수수료(건당) : 54,000원
 - 〔 기본보수액 30,000 원
 - 원인증서작성료 10,000 원
 - 등기부열람료 4,000 원
 - 등록세납부대행 10,000 원 〕
 - 가산수수료 : 설정액 1천만원초과액의 7/10,000
부동산 필지 2건 초과시 건당 1,000원
기계·기구 등 공동담보 목록이 있을 때 10,000원

(3) 인지세(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대 출 금 액	인 지 대
5백만원 이하	면 제
5백만원초과 ~ 1천만원 이하	10,000 원
1천만원초과 ~ 2천만원 이하	20,000 원
2천만원초과 ~ 3천만원 이하	30,000 원
3천만원초과 ~ 5천만원 이하	40,000 원
5천만원초과 ~ 1 억원 이하	70,000 원
1억원초과 ~ 5 억원 이하	150,000 원
5억원초과 ~ 10 억원 이하	250,000 원
10억원 초과	350,000 원

※ 농·수·축·임협조합원이 당해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 대출받을 때에는 5천만원까지 면제(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제5호)

- 다만, 동일인의 대출합계액이 5천만원초과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신용보증료

구	분	보 증 료 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대출기간 3년 미만	연 0.3%
	대출기간 3년 이상	연 0.2%

라. 기타

사업대상자별 선정, 지원한도, 지원조건 및 기타 대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종 농림수산업자금대출취급지침 및 동요령과 농·수·축·임협 여신관련 제 규정에 따름

4. 농림사업 평가제도

가. 배경

- 종전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과 “농림수산사업평가실시요령”으로 분산규정된 평가관련 규정을 “농림사업평가규정”으로 일원화하고
- 평가의 종류·방법·범위·기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나. 요지

- 평가의 종류 : 종합평가, 정책평가
- 종합평가
 - 평가항목 : 철차이행 상태, 지방비 투입실적, 사업자별 사업추진상황, 시군별 농림사업 추진 진도 및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여 점수화
 - 대상사업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조제2항의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
 - 평가주기 : 매년12월말기준(연1회)
 - 평가결과의 활용 : 우수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농정실적가산금 지원
- 정책평가 : 분야별 주요정책이나 제도 또는 투융자사업에 대한 평가(필요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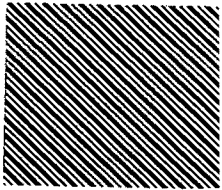
다. 기타사항

- 상세한 내용은 별도의 『농림사업평가규정』 참조

[참 고 자 료]

농림사업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여 백

농림사업실시규정

[1995. 11. 14.]
훈령 제834호 전문개정

개정 1996. 10. 28. 훈령 제877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농림사업의 선정과 실시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및 시행체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임업인 등이 창의와 자조노력을 바탕으로 농림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10. 28.>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림사업”이라 함은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서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는 사업을 말한다.
2. “자율사업”이라 함은 농업인·임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 생산자단체 및 농림사업의 실시를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세부사업내용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3. “공공사업”이라 함은 공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생산자단체등·비영리법인·상사법인 등(이하 “지정법인등”이라 한다.)이 정부의 계획과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총괄부서”라 함은 농림부, 농촌진흥청·산림청(이하 “청”이라 한다.),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 시도”라 한다.), 시·군·자치구(이하 “시군등”이라 한다.)의 과단위 보조기관(이하 “과”라 한다.)으로서 이 훈령에 따라 농림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사업부서”라 함은 농림부, 청, 시도, 시군등의 과로서 농림사업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3조 (적용범위 등) ① 이 훈령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농림사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1의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하되 이를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구분한다.

1.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입(국제협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매비축
2. 정부가 일시적으로 과제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조사연구(조사연구의 목적이 되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정부가 지정법인등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
4.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업 또는 정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집행하는 사업비
5. 기관운영, 차액보상, 이차보전 등 사업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전문개정 1996. 10. 28.]

제3조의2 (사업시행지침 등) ①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연도(이하 “사업예정년도”라 한다.)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지침안에는 사업예정년도의 사업시행 요령과 사업예정년도 다음년도의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기재하되,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 적용할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의 총괄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시행지침안을 확정하고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포함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월 20일까지 농림부의 사업부서, 청, 시도,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기관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사업시행지침안중 제4조의3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확정하기 전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중 제4조의3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이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의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농림사업중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은 이 훈령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농림사업중 제3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시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지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4조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농림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림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농림부 차관보·농업정책실장 및 각 국장(공보관, 감사관, 농업통계정보관, 각 심의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청의 기획관리관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회장 각 1인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전문개정 1996. 10. 28.]

제4조의2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6. 10. 28.>

제4조의3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율사업을 공공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2. 사업시행지침중 신청의 자격·절차·구비서류의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3.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의 기준·우선순위·절차의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4. 신규사업의 선정 및 그 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림사업 추진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1996. 10. 28.]

제4조의4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사업의 선정을 위한 경우는 2월, 4월, 7월, 9월의 마지막 주중 각 1회를 제외하고는 이를 소집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4조의5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림부 투자심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1996. 10. 28.>

제4조의6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에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한 16인의 실무위원을 두되, 실무위원장은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실무부위원장은 농림부 투자심사담당관이 되며 실무위원은 농림부의 국장 및 청의 기획관리관인 위원 소속의 직제상 가장 상위의 과의 장과 농림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림부 투자심사담당관실의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서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④ 제4조의4의 규정은 이를 실무위원회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5조 < 삭제 1996. 10. 28.>

제6조 < 삭제 1996. 10. 28.>

제 2 장 자 율 사 업 <개정 1996. 10. 28.>

제7조 (자금지원계획 및 자율사업 신청요령의 공고)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요령 등을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하는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중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
2. 사업의 종류와 이에 대한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3.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4. 기타 신청할 때 알아야 할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시군구, 읍면동, 농촌지도소,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 자연마을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반상회보 등에 실어야 한다.

③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을 읍면동을 통하여 반(班)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8조 (자율사업의 안내 등) ① 시군구, 읍면동, 국립농산물검사소 출장소, 농촌지도소, 농업협동조합등,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부, 농지개발조합, 농어촌진흥공사 지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의 장은 당해 기관의 직원중에서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기관내에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안내 및 상담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지원의 규모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자격, 자율사업의 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2.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고려할 사항(농지이용계획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기술수준, 노동력, 토지 및 생산시설과 영농후계자의 자격요건
4. 담보(신용보증서에 의한 담보를 포함한다.) 및 자부담 능력
5. 사업의 수익성 및 전망
6. 선도농가의 사례 또는 외국의 예
7. 생산자단체등의 구성방법 및 절차
8. 농지전용, 건축허가 등 인허가의 요건 및 절차
9. 자율사업이 잘못될 경우 예상되는 농업인등 또는 생산자단체등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6. 10. 28.]

제9조 (자율사업의 신청) ① 자율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율사업신청서를 시군등의 총괄부서, 농촌지도소 또는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한다. 농촌지도소장 및 읍면동장이 자율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이하“시장수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율사업신청서의 내용과 자율사업신청서를 제출할 기관을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이를 심사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대한 심사의견서(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서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포함한다.)를 붙여 시장군수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율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3천만원(농업인후계자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 경우는 2천만원으로 한다.)이상의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대출신청자료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10조 (자율사업신청서의 제출기한) 자율사업신청서는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월 20일(사업예정년도가 1998년인 것은 전년도 1월 31일로 한다.)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0. 28.>

제11조 (자율사업신청서의 심사)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율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중 지원신청금액이 제9조제4항에 정하는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관에 사업성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임업과 관련된 것은 임업협동조합
2. 제1호이외의 것은 농촌지도소

③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지원신청금액중 대출금이 있는 경우는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대출신청자료를 붙여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금액이 제9조제4항에 정하는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신청자명단만으로 일괄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12조 (농촌지도소 등의 사업성검토) ① 농촌지도소장 또는 임업협동조합장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등으로부터 사업성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업성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촌지도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성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읍면동 및 농업협동조합등의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13조 (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사)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등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신청자료를 생략한 경우에는 신용조사서 대신 불량거래자 또는 대출부적격자 명단을 일괄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6. 10. 28.>

제14조 (자율사업신청서의 심사 및 자금지원우선순위의 결정 등) ①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서 및 신용조사서에 따라 자율사업신청서를 심사하되, 지원신청금액이 제9조제4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되는 때에는 농업협동조합등의 직원과 합동실무검토반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1항의 심사결과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자율사업신청서와 함께 시군등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2. 시군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3.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의 현황
4. 시도, 시군등 또는 농업협동조합등의 자체 지원계획
5. 시군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6.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한 자
7. 전년도 사업을 추진한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자율사업신청서를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자치구의 자체 심의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15조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공개심의 등) ①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상정한 신청자에 대한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자율사업신청서를 제1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자율사업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의로써 이에 갈음한다.

②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분과위원회(품목별 소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는 당해 소분과위원회를 말한다.)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구성원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6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정하는 자의 수가 그 최대인원에 미달되는 경우는 그 최대인원을 포함한 35인이내로 시장군수등이 따로 구성하는 전문심의기구의 심의로써 제1항의 심의에 갈음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지원신청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는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자율사업신청서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광역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전문가(전문기관을 포함한다.)를 지정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 공개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16조 (시군등의 예산신청 및 공지)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별로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2월 28일까지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시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내용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 및 지원예정금액, 예산 또는 기타의 사정에 따라 자금지원우선순위가 변경되거나 지원예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는 사항, 이에 대한 열람장소 및 기간 등을 시군구의 홍보지 또는 반상회보 등에 실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17조 (시군등의 예산신청에 대한 시도의 심사 등) ① 시도의 총괄부서는 시군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를 시도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 사업부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를 제14조제2항 각호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후 그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 농어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연차별 자금지원계획
2. 농림부 또는 청이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금지원계획 또는 시도의 자체 자금지원계획

③ 시도의 총괄부서는 사업별로 시군등의 사업량 및 소요예산의 조정안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포함한다.)을 도 농어촌발전심의회(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체심의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 도 농어촌발전심의회는 제14조제2항 각호 및 제17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하여야 한다.

⑤ 시도의 총괄부서는 도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사업별로 시군등의 사업량 및 소요예산액을 정하여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도의 총괄부서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 또는 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시군등에 통지하고 이를 시도의 홍보지 등에 실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18조 (시도의 예산신청에 대한 농림부 또는 청의 심사) ①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심사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조정한후 사업별 예산요구안에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붙여 이를 예산편성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군 농어촌발전계획 및 시군 농지이용계획에 반영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2.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 연계성
3. 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결과
4.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6. 10. 28.]

제19조 (정부예산안의 통지 등) ① 농림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정부예산안(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작성되면 지체없이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로부터 시도 및 시군등의 예산배분계획안을 제출받아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정부예산안에 따라 시도의 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시도 예산안에 따라 시군등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사업별 자금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포기 또는 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영농 또는 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20조 (정부예산의 배분계획 확정 및 통지) 농림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사업예정년도의 정부예산(각종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확정되면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예산배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0. 28.>

제21조 (시도예산의 배분계획 확정 및 통지) 시도지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예산의 배분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시도예산의 시군등에 대한 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0. 28.>

제22조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예산의 시군등에 대한 배분계획과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예정년도의 1월 15일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자금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군수등이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2. 사업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새로 자율사업신청서를 제출받되, 그중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자

[전문개정 1996. 10. 28.]

제23조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확정의 공지)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할 때에는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시군구 및 농업협동조합의 홍보지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할 때에는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등,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 지부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도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24조 (경영장부의 기록 등) ① 시장군수등은 정부로부터 제9조제4항에 정하는 금액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스스로 평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등은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제9조제4항에 정한 최저 금액미만으로서 1천 5백만원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 3 장 공 공 사 업 <개정 1996. 10. 28.>

제25조 (공공사업의 신청) ① 공공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등 또는 시도의 총괄부서,

농림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공공사업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이하 “공공사업주관자”이라 한다.)에게 제10조에 정한 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사업주관자가 공공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타당성·경제성·사업효과의 확산방안·사업준비상태 및 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의견서와 함께 이를 시도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청기한에 관하여 사업시행지침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26조 (공공사업신청서의 심사 및 예산 반영) ① 시도지사 또는 공공사업주관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신청서에 대한 심사의견을 제17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심사의견을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에 반영(국고의 경우 재정경제원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27조 (자금지원대상자 등의 선정) ①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은 정부예산이 확정되는대로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견을 참고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예정년도의 1월 15일까지 자금지원대상자 및 사업시행지구를 확정하여 이를 지체없이 시도지사 또는 공공사업주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은 자금지원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지구의 선정이 완료될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공공사업주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 삭제 1996. 6. 13., 본조 신설 1996. 10. 28.]

제28조 (준용규정) 제7조, 제8조(제2항제7호를 제외한다.), 제9조제1항의 별지 제3호서식, 제11조 내지 제17조제3항, 제17조제5항,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이를 공공사업에 준용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3호중 “영농후계자의 자격요건”은 “경영능력”으로 하며, 제8조제2항제6호중 “선도농가”는 “우수사업자”로 하고, 준용규정중 “자율사업”은 “공공사업”으로, “농업인등 또는 생산자단체등”은 “지정법인등”으로 한다. <개정 1996. 10. 28.>

제 4 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개정 1996. 10. 28.>

제29조 (신규사업의 제안)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농림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를 통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부의 자금지원 필요성
2.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림사업과의 유사성
3. 경제성
4. 농업인등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마쳤거나 공청회를 거친 경우는 그 결과
5. 법령 또는 국제규범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사항
6. 기대효과
7. 기타 신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농업인등 또는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제안서를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농업인등 또는 생산자단체등이 제안한 신규사업에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의 계통조직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중앙조직의 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중앙조직의 장은 타당성을 분석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30조 (신규사업의 선정요구) ①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거나 제2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이 있을 때에는 제29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타당성분석자료에 사업시행지침안을 붙여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신규사업의 선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청의 소관사항은 자체 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서 요구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분석결과 신규사업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31조 (신규사업의 선정) ① 농림부의 총괄부서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개최일의 5일전 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한다.

②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사업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상 긴급성이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농림부의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신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농어촌발전계획수정정보완지침에 따라 도 및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32조 < 삭제 1996. 10. 28. >

제33조 < 삭제 1996. 10. 28. >

제34조 < 삭제 1996. 10. 28. >

제 5 장 보 칙 <개정 1996. 10. 28.>

제35조 < 삭제 1996. 10. 28. >

제36조 < 삭제 1996. 10. 28. >

제37조 < 삭제 1996. 10. 28. >

제38조 < 삭제 1996. 10. 28. >

제39조 (사업의 관리책임 등) ① 농림사업의 관리책임은 법령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등에게 있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사업주관자에게 신청한 공공사업은 당해 공공사업주관자에게 1차 관리책임이 있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하는 형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군등은 지원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시설등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당해 읍면동에 관리대장을 비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에는 별표2의 농림사업안내문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등의 입구·몸체·기타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⑤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40조 < 삭제 1996. 10. 28. >

부 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당시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업이 이 훈령에 의한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당해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요령에 의한 세부사업지침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 칙 < 개정 1996. 10. 28.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림사업분류표는 1997.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7. 1. 1. 전에 시행할 수 있다.

③ (경과조치) 농림수산사업지침심의위원회운영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대분류	중분류	단 위 사 업 명	
		자 율	공 공
	나.농업기계화 (7)	(3)	(4)
		농기계구입자금지원	
		생산자조직농기계구입지원	
		농기계보관창고설치	
			농기계사후관리
			시설농업기자재생산시설 및생산비축지원
			국제농림축수산기계박람회
	다.생산및유통개선 (3)	(2)	(1)
		미곡종합처리장	
		임도정공장시설대체	
			직접지불제실시

대분류	중분류	단 위 사 업 명	
		자 율	공 공
			농산물류표준화 과실·화훼판매촉진 산지포장개선시범사업 농산물해외시장개척 농산물무역진흥센터건설 수출농산물수송체계지원 농산물물류센터건설 농산물포장센터건설 생산자단체출하조절 공동규격출하지원 출하촉진자금 품목별생산자조직육성 채소가격안정사업

대분류	중분류	단 위 사 업 명	
		자 율	공 공
3. 축산업구조 개선 (26)	가. 사육기반확충 (9)	(6)	(20)
		(6)	(3)
		한우경쟁력강화 젖소경쟁력강화 돼지경쟁력강화 닭경쟁력강화 기타가축육성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축산분뇨처리시설 축산단지조성 가축계열화
	나. 생산및유통개선 (12)		(12)
			축산물종합처리장건설 도축도매시설개선 가공판매시설및운영 축산물품질향상및안전성 강화 소수급관리전산화 축산경영여건개선

대분류	중분류	단 위 사 업 명	
		자 율	공 공
			축산업협동조합육성지원
			사료제조시설설치
			축산기자재생산시설
			학교우유급식
			사료원료수입
			조사사업
	다.소득원개발 (1)		(1)
			축산경영자금
	라.가축개량 (3)		(3)
			소정액생산및공급
			종축등록및검정
			전문종돈업육성
	마.기타사업 (1)		(1)
			수의기술교육관건립

대분류	중분류	단 위 사 업 명	
		자 율	공 공
4.농촌개발 (25)	가.생산및유통개선(2)	(7)	(18)
		(1)	(1)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 지원		농산물가공산업육성
나.기술개발및정보화 (5)	다.인력육성 (8)	(1)	(4)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농촌활력화시범사업* 농림수산정보화 농림수산기술개발 기술지도사업*
		(3)	(5)
		농업인후계자육성 전업농육성 선도농업경영체지원	농업인자녀학자금 농림계특성화대학지원 자영농고육성 농업전문대학지원 한국농업전문학교지원*

*표는 농촌진흥청 소관사업임

대분류	중분류	단 위 사 업 명	
		자 율	공 공
	라.소득원개발 (6)	(2)	(4)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	
		농촌특산단지육성	
			농공단지육성
			농촌특산품판매장설치
			한계농지정비
			농업경영자금
	마.생활환경개선 (3)		(3)
			식생활개선교육홍보
			농촌정주생활권개발
			농촌생활용수개발
	바.기타사업 (1)		(1)
			농업인의날행사지원

대분류	중분류	단 위 사 업 명	
		자 율	공 공
5.임업및산촌 구조개선(24)		(6)	(18)
	가.경영기반확충 (7)	(1)	(6)
		산림경영장비지원	사유림협업경영 임도시설 영림계획 다목적산림경영시범단지조성 임업협동조합육성 임업기술보급
	나.생산및유통개선(6)	(3)	(3)
		임목생산 임산소득증대 임산물가공지원	표고종균생산시설 임산물유통개선지원 합판및보드류시설지원
	다.인력육성 (3)	(1)	(2)
	독립가및임업후계자육성	임업전문인력양성 임도시공장비지원	
라.환경임업육성 (5)		(5)	
		산림휴양공간조성 산불방지대책 사방사업 산림생태보전 산촌종합개발	
마.산림자원조성 (3)	(1)	(2)	
	해외조림사업	산림조성 산림병해충방제	

농림사업안내문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199 년도 농(산)촌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사 업 자 ○ ○ ○	

↑
80
cm

← 110cm →

주) 공공사업의 경우는 사업자 란에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명을 기재

나. 준공후 안내문

이 사업(시설)은 농(산)촌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 년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입니다.

1. 사업명 :
2. 사업자 :
3. 시설규모 :
4. 재원 :
5. 사업비 :
6. 사업기간 :

○○○○ 년 월 일

30cm

21cm

다. 스티카형 표시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농(산)촌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 년에 정부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2. 대 상

- 중요사업의 건축물, 공작물, 사업장 등으로서 총사업비가 5천만원이상 투입되는 사업(사업시행자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총사업비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의 시설등

< 예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 어선, 대형농기계 등

3. 표시방법

-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규격 110cm×80cm)
-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의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카도 가능함

4. 기 타

- 농어촌특별세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표시문안을 「이 사업은 199 년 도 농(산)촌구조개선대책사업중 농어촌특별세로 추진되는 사업임」 을 명시함

[별지 제1호서식 : 제3조의2제1항 관련]

일련 번호	단 위 사 업 명 ()
	(세 부 사 업 명)

< 작성요령 >

- 별도의 지침지시없이도 농업인등 사업시행자가 사업실시에 관하여 궁금해 하지 않을 정도로 분량에 제한없이 상세히 열거
- 일련번호는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단위사업의 순서를 적되 세부사업명이 있는 경우는 단위사업의 일련번호뒤에 세부사업의 일련번호를 1부터 순서대로 기재함. 세부사업명은 단위사업이 이질적인 여러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경우에만 농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명칭을 단위사업명과 함께 기재함

(예) - 단위사업만 있는 경우 :

1	영농규모적정화 (자율)
---	--------------

- 세부사업이 있는 경우 :

108 -2	농촌정주권개발 (공공) (문화마을조성)
-----------	--------------------------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이 서식에 열거된 주요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항목을 변형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관계자료를 별도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음
- 각 항목의 기재는 반개조식을 원칙으로 작성하되, 당해 항목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요점적으로 정리하여 기재하고, 추상적인 내용은 기재하지 않음
-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는 "법인경영체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을 기재하여야 함

< 법인경영체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 >

-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중전기준에 따라 이미 신청된 '97년사업의 경우는 중전의 자격요건을 적용할 수 있음) (공통기준)
 - 총출자액이 1억원이상인 법인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출자액의 50%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농지,시설등)로 출자한 법인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법인경영체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법인경영체가 생산하는 주생산 품목과 관계없이 일반적 필요에 의한 별도의 사업 하나만을 지원할 수 없음. 예 : 간이집하장, 포장센터, 한우고기전문판매점 등)
- 법인경영체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등기부상의 출자가 조합원별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시군에서 확인
- 지원후에도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으로 등기실행되었는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를 확인후 정산
- 법인경영체 지원시설의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건축)이 직접담당
- 정부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하는 법인경영체는 매년도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군에 보고
 - 보고하지 않는 법인경영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실적은 공동생산,출하,가공,유통,수출,농작업 대행 등 법인경영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에 한함
- 지원대상자 선정시 1회에 3일이상 시군의 회계,세무,마케팅,농림정보 활용방법 등 교육을 이수한 법인경영체 우선선정
- 위 기준외에 개별 사업에 대한 기준은 농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00 과입니다.
00 청

1. 목적

2. 추진방향

3. 근거법령(지원근거가 되는 법령의 관련조항을 법령의 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4. 연도별 지원계획(42조원 구조개선 및 15조원 농특세사업 위주로 작성하되 굵은선 안에는 사업예정년도의 예산안 금액을 기재)

구분		'92-년	년	년	년 (예산안)	년	-2004
사업량							
사업비	계	백만원					
	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1] 자금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의 가액은 사업비(자부담금 포함)에 포함되지 않음

5. ○○년도 사업시행요령(○○년도는 사업예정년도를 말함)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배경, 지원대상자, 지원단가, 지원조건, 지원시설의 종류 등 사업의 세부내용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사항을 반개조식으로 기재

나. ○○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년도는 사업예정년도를 말함)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합계	예 산 액 (재원명 기재)					
			계	보 조	음 자			
계		백만원						

* 음자조건 : 연리 %, 년거치후 년상환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명을 기재)

나. 사업담당부서(과단위까지 기재하고 농림부 및 청의 경우는 지역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를 병행기재)

○ 농림부(또는 ○○청) :

○ 시도 :

○ 시군자치구 :

다. 자금지원예정자(자율사업의 예와 같이 자금지원예정자가 다수인이어서 기재할 수 없거나 확정전에 발표하여 혼란이 예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음)

라. 사업시행

○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사업비 지원방법

마. 기타사항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제한 기 준	비 고
	부 터	까 지		

나. 보고·기타

- * 보고에 있어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사무관리규정 제4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보고심사관의 수시보고심사를 받아야 함

6. ○○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년도는 사업예정년도의
다음년도를 말함)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사업신청서
를 제출할 기관명]

나. 신청자격

- * 농업인등의 선호가 높아 신청경쟁이 치열하여 탈락자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자격요건 강화조건을 반드시 기재

다. 신청절차

라. 구비서류

[별지 제2호서식 : 제3조의2제3항 관련]

1900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각권별 제목]

총6권중 제0권

1900. 00. 00.

농림부

< 작성요령 >

○ 구성 : 총6권

- 제1권 : 관계규정 해설 및 시책안내
- 제2권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3권 : 농업(원예특용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4권 : 축산업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5권 : 농촌개발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6권 : 농업및산촌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편성

- 각권의 첫장에 일러두기를 기재(권별 수록내용, 문의기관 등)
- 각권내용의 차례(目次)를 전체권 공통순서로 하여 특정권만으로도 다른권에 수록된 내용목록을 알 수 있도록 함
- 각권의 쪽번호는 제1권부터 시작하여 제6권까지 일련번호를 부여함

[별지 제3호서식 : 제9조제1항 관련]

자 율 사 업 신 청 서

신 청 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호		전 화	
	주 소					
	영농(림) 종사경력	년	학 력	년 월	학 교 (과)	졸업·중퇴
	생산자단체등 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규모(량)	
	사 업 예 정 지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국고계			보 조	대 출		
농림사업실시규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청구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액이 3천만원(농업인후계자 및 쌀전업농지원사업은 2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영농규모 (m ²)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배현황 (m ²)	벼	사과	배	포도				계
시설현황	개별 시설	관 수 시 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타	
		관정 : ha		m ²	m ²	대		
		점적관수 :						
		스크링클러 :				(톤)		
	공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타	
		m ²	개소 (톤) 식		대 (톤)	m ²		
	(주) : 1. 선과기의()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기타사항								

2. 사업계획

- 사업명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 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 비	자담
					계	보조	대출		
계									
농가	○○○○								
	○○○○								
	○○○○								
생산 자단 체등, 회사, 기타	공동시설								
	○○○○								
	○○○○								
	기타시설								
	○○○○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로 표시

< 작성요령 >

○ “1.현황”은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사업계획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 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
-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 변경 가능

[별지 제4호서식 : 제9조제4항 관련]

대출 신청 자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생산자단체등의 형태		참여자수		
성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계	보조	대출	
사업 예정지					자담	

2. 예금 및 부채 현황

(단위 : 백만원)

예금 현황			부채 현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계	예상평가액 (백만원)	先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19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5호서식 : 제12조제1항 관련]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생산자단체등의 형태		참여자수			
성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사업예정지							

2.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구역	지구	구역	지구

3. 사업검토

구분		평가			검토의견
		상	중	하	
사업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경력 또는 조직력 ○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 영농기술 또는 경영능력 ○ 영농규모 				
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전망 				
입지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이용계획 ○ 생산 또는 원료조달 ○ 용수 ○ 전력 				

※ 농촌지도소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19 년 월 일
○ ○ 농촌지도소장 (인)

[별지 제6호서식 : 제13조 관련]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등 회사.기타명칭	주민등록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천원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신용보증 담 보					

※ 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19 년 월 일
()협동조합장 (인)
()시군지부장 (인)

[별지 제7호서식 : 제24조제1항 관련]

경 영 장 부

1. 수입

(단위 : 천원)

월 일	수 입 내 용	수 량	금 액	비 고

2. 지출

(단위 : 천원)

월 일	지 출 내 용	수 량	금 액	비 고

3. 경영성과

구분	비 목	금 액	비 고
수입	주 산 물		
	부 산 물		
	계(A)		
지출	종자(묘)대		
	농약 및 비료대		
	원료구입비		
	전기료 및 유류대		
	기타 제재료비		
	소농구 구입비		
	소가축 구입비		
	인 건 비		
	수 리 비		
	농기계사용료		
	임차료(토지임차료제외)		
	토지임차료		
시설장비등 감가상각비			
농기계감가상각비			
차입금이자			
자본용역비			
기타비용			
	계 (B)		
손익	A - B		

< 작성요령 >

- 지원금액이 3천만원(농업인후계자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 경우는 2천만원)이상인 경우 작성하되 사업 또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식을 변경할 수 있음

- “1. 수입” 및 “2. 지출”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작성
 - 고정비 : 토지·건물·시설·기계·장비의 구입 또는 설치비, 번식 또는 사육용 대가축 및 증가축구입비, 종묘구입비 또는 위의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권리금 등 재산형성적 비용
 - 변동비 : 종자·농약·비료·원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가축구입비, 소농구구입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임차료 등 소모성 비용

- 경영성과는 연말에 작성하되 지출대장과 수입대장에 의함(가계비는 제외함)
 - 소농구구입비 : 트랙터, 경운기등 농기계를 제외한 삽, 낫, 괄이 등 구입비
 - 인건비 : 실제 지불된 인건비와 자가노력비(지역노임을 기준하여 산출)
 - 임차료 : 연간 지불한 임차료의 금액(전세보증금의 경우는 보증금액의 10% 해당액)
 - 토지임차료 : 빌린 토지의 경우는 지불하는 임차료를, 자기토지의 경우는 인근 토지 임차료를 기준하여 산출
 - 감가상각비 : 건축물 및 시설장비 등 고정자산구입비 또는 농기계구입비(소농구구입비 제외)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계상

·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

구조 또는 자산명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4년	3년-5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몰탈조, 기타조의 모든 건축물	20년	15년-25년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축물	40년	30년-50년

·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

적용대상자산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농업(과수는 제외) 및 관련 서비스업,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건설업	4년	3년-5년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 서비업, 음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8년	6년-10년
농업중 과수	16년	12년-20년

- 내용년수범위는 사업자가 내용년수를 신고할 수 있는 범위이며, 사업자가 신고한 경우에만 그 내용년수를 기준함

자본용역비 : 대 농기계구입, 시설물설치, 시설장비구입 등 고정자산구입가액(보조지원금액은 제외)의 10% 해당액

[별지 제8호서식 : 제24조제2항 관련]

경 영 일 지

(금액 : 천원)

년월 일	내 용	수량	단가	수입	지출	잔액

(주) 지원금액이 15백만원이상 3천만원(농업인후계자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 경우는 2천만원)미만인 경우만 작성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 1996. 6. 13. 〕
훈령 제862호 제정

개정 1996. 8. 8. 훈령 제864호
개정 1996. 10. 19. 훈령 제 875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농림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8. 8.>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 8. 8.>

1. “농림사업자금”이라 함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국고, 기금, 자금,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농림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집행관리하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감독 권한이 있는 것(이하 “사업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6. 8. 8, 1996. 10. 19.>
2. “지원대상자”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임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 농업인등의 협동조직,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중 농림업과 관련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사업자금의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1996. 8. 8.>
3. “지원”이라 함은 융자, 보조, 투자, 출자, 출연,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자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집행관리”라 함은 지원에 따른 자금한도액의 배정,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의 결정, 수표의 발행, 지급, 제7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역금 및 그 이자의 수납 등(이하 “지급등”이라 한다.)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지급등에 관한 세부 사무처리 절차 및 사후관리 지침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업자금관리자”라 함은 법령에 의하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아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6. 10. 19.>
6. “사업자금과”라 함은 농림부장관 또는 농림부 산하 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과단위 보조기관(직제상 과와 같은 급의 담당 또는 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라 한다.)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 <개정 1996. 10. 19.>
7. “사업지원과”라 함은 농림부 또는 청의 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
<개정 1996. 10. 19.>
8. “사업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사업비의 지원 또는 지원결정(자금한도액 범위안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금액을 확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사업실적의 확인, 지원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것을 말한다.
9. “개별규정”이라 함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외에 개별적으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개정 1996. 8. 8.>

제3조 (다른규정과 의 관계)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이 이 훈령에 위배되는 때에는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은 이 훈령의 범위안에서만 효력이 있다.<개정 1996. 8. 8.>

제4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① 사업자금은 그 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 개별규정, 사업시행지침 또는 예산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1996. 8. 8.>

②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대출기간이 1년미만인 대출금이 포함된 경우를 제외한다.)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사업비중 자부담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이고 자부담금액이 2억원이상인 경우는 자부담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실적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집행
<개정 1996. 10. 19.>

2. 제1호이외의 경우는 자부담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개정 1996. 8. 8.>

③ 사업주관기관은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에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집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매 분기말 기준으로 사업자금의 지원비율을 일치시켜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사업자금의 이월) ① 당해 회계년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부득이 지출하지 못한 사업자금은 사업자금의 예산을 담당하는 과(이하 “예산과”라 한다.)가 사업지원과의 신청을 받아 이를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

② 예산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을 이월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회계년도 1월 30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한 사업자금은 이를 다시 이월할 수 없다.

제6조 (융자조건의 결정) ① 융자조건은 사업자금과가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대상자로부터 대출기간의 연장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지원과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에 융자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별규정에 따로 정하는 경우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자금과의 의견을 받아 직접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6. 10. 19.>

③ 제2항의 경우 사업자금과는 융자조건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회계년도 사업자금의 세입총액의 1,000분의 5(연간 합산액으로는 1,000분의 30을 말한다.) 이상의 세입이 당해 회계년도내에 감소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미리 사업자금의 세입을 담당하는 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0. 19.>

④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원과가 융자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는 사업자금과와 협의하였다는 뜻을 당해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0. 19.>

제7조 (융자의 방법) ① 융자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사업자금관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자금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임업협동조합중앙회·인삼협동조합중앙회·기타 법령이나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농협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한다.

<개정 1996. 8. 8, 1996. 10. 19.>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농협중앙회등은 대여금을 대출취급기관에 재대여하거나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대출하며, 대출취급기관은 재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한다.

제8조 (대여 및 대출의 실행) ① 사업자금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때 이후 개별규정에 정하는 때에 대여를 실행한다.

1. 농업인등 및 그 협동조직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세부 사업내용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자금을 지원받아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이하 “자율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사업주관기관이 자금한도액 범위안에서 그 계통조직을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금액을 확정하는 경우는 마지막 단계의 계통조직에 자금한도액을 재배정한 때(다만, 사업자금과가 12월에 자금한도액을 배정한 경우는 이를 사업주관기관별로 재배정한 때를 말한다.)

2. 제1호이외의 경우는 자금한도액 범위안에서 사업주관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금액을 확정할 때 <개정 1996. 8. 8.>

②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실적을 확인받아 대출을 실행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실적확인전지급사유”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등이 지원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비(1천만원의 범위내에서 개별규정에 따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설비 또는 장비 등의 제작·설치·구입과 토지매입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실적을 확인받지 아니

하고 일시에 전액을 여신관리계좌에 입금하는 방법(농협중앙회등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여신관리계좌에 준하여 개별규정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개정 1996. 10. 19.>

④ 대출취급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여신관리계좌에 입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자금한도액 배정 등의 통지) 사업자금과가 자금한도액을 배정한 때와 사업지원과, 서울특별시·광역시·도, 사업주관기관 등이 사업자금과가 배정한 자금한도액을 계통조직별로 재배정하거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금액을 확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출불가능한 대여금의 반납) ① 농협중앙회등은 대여금중 대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매분기말 현재 지원대상자의 사업포기 또는 담보물 부족 등의 사유로 재대여 또는 대출할 수 없는 금액
2. 예산에 계상된 연도의 다음년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금액

② 농협중앙회등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출불가능한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반납하고자 하는 금액에 대여일부터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금리율이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율보다 높을 경우는 약정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③ 농협중앙회등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대여 또는 대출할 수 없는 금액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매분기말까지 사업주관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확인내용을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자의 납부) ① 대여금(대여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여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개별규정에 납부일자를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자금과는 농협중앙회등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자를 납부할 때에 대
여일후 개별규정에 정하는 날부터 대출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중의 금액에 대하여
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개
별규정에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한다.

③ 대출금(대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출일부터 매 1년
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대출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니거나 지원대상
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주기를 1년의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96. 10. 19.>

제12조 (여신관리계좌의 운용) ① 대출취급기관이 대출금을 여신관리계좌에 입
금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대상 부지의 확보,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의 취득, 설
계완료(건축공사가 있는 경우는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공사, 구매, 기타 사업
시행과 관련된 계약의 체결 등 사업착수가 실제로 가능한 시점인지를 확인하
여야 하며, 월별 공정계획(공정에 따른 지원비율별 소요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농업인등인 경우로서 사업시행
기간이 6월이하이고 대출금액이 2억원이하인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 공정계획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1996. 8. 8.>

② 대출취급기관은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월별 공정계획을 참작하고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실적을 확인받아 지급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
상 지급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관기관이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
에는 지체없이 사업진척을 확인하고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지원과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을 포기하였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는 미지급액을 농협중앙회등을 거쳐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할 것

2. 단순히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는 그동안의 여건변동사항을 고려한 새로운
공정계획을 지원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그에 따라 미지급액을 지급하도록 할 것

④ 여신관리계획에 입금된 대출금은 예산에 계상된 연도의 다음년도말을 경과
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3조 (보조금의 집행) ① 법령 또는 개별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의 권한이 있는 자(이하 “보조금집행자”라 한다.)는 보조금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내용의 조건을 붙여 사업별로 교부결정하고 그 범위안에서 지급
한다.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사업을 다른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조금집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
2.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보조금집행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
3.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
금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
을 보조금집행자에게 반납하게 한다는 사항
4.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원과가 사업시행
지침에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기간중 그
중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하게 하여야 하며 보조금집행자의 승인없이 보조
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항
5. 기타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거나 사업지원과 또는 보조금집행자가 정
하는 사항

② 보조금은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실적확인전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리 지급한 후 정산할 수 있다.

③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14조 (부당사용한 대출금의 회수) 대출취급기관은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대출금 사용실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부당사용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농협중앙회등,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개별규정에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농림업 외의 용도(농림업과 관련되는 분야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된 경우는 지원목적외의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업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때 <개정 1996. 8. 8.>
3.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4. 대출금이 집행된 후에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5. 대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사업주관기관으로 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통지가 있을 때

제15조 (부당사용한 대여금 등의 반납) ① 농협중앙회등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의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이 여신관계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때에 지체없이 당해 대출금 상당의 부당사용한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대출취급기관이 여신관계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는 부당사용사실을 통지받은 날
2. 제1호이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이 당해 대출금을 회수한 날(대출취급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기전에 대여금의 상환기한이 도래한 경우는 대여금의 상환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농협중앙회등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당사용한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통지서 접수일(제1항제2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이 당해 대출금을 회수한 날을 말한다.)부터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집행자는 지원대상자의 보조금(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사용실태를 매 분기말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14조의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때(제14조 단서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 당해 보조금을 회수하여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 단서 및 제1호·제2호·제4호·제6호의 “대출금”은 “보조금”으로, 제14조제3호의 “대출”은 “보조”로 본다.

제16조 (지원의 제한) ①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 보조금집행자 또는 사업자금과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기간(2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 당해인(농업인등의 협동조직으로서 법인이 아닌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을 1인으로 본다.)에 대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사용한 금액이 10억원이상이거나 당해 사업비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한 금액의 비율(이하 “부당사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이상인 때 : 5년
(100분의 50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이 1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
2. 부당사용한 금액이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이거나 부당사용비율이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미만인 때 : 3년
3. 부당사용한 금액이 1억원이상 5억원미만이거나 부당사용비율이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미만인 때 : 2년
4. 부당사용한 금액이 1억원미만이거나 부당사용비율이 100분의 20미만인 때 : 1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하여서는 아니되는 기간(이하 “지원제한기간”이라 한다.)이 2년이상인 경우는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제한기간의 100분의 50범위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제한기간의 가산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대출금의 경우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출취급기관의 통지서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도달된 날
2. 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집행자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확인한 날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관리자, 보조금집행자 또는 사업자금과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지원제한기간을 확정할 때에는 당해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지원제한기간의 개시 및 종료 년월일,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당해인, 사업자금과, 사업지원과, 사업주관기관, 농협중앙회등,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지원제한의 특례)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는 지원제한기간을 개별규정에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8조 (보칙)** ①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등의 협동조직(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임업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서 법인에 한한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회사,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 및 그 연합회, 기타 정부사업(손익이 사업자금에 귀속되거나, 사업비의 전부를 지원하거나, 공공성이 강하여 이를 정부가 시행하지 아니하면 관련분야의 발전에 심한 지장이 있다고 사업시행지침에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개정 1996. 8. 8.>
- ② 사업자금과는 사업자금의 집행실적과 사업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기 위한 전산처리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6. 8. 1.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2항과 부칙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1996. 8. 1. 이후에 확인한 것부터, 제4조제2항 및 제3항과 제12조제4항의 규정은 이 훈령 시행당시 개별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도 사업자금 예산부터 각각 적용한다.<개정 1996. 8. 8.>
- ② (다른 훈령의 개정)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 제834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 1996. 8. 8.>
제27조 및 제40조제4항 내지 제6항을 삭제한다.
- ③ (다른 훈령의 개정) 농림수산사업평가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 제825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 1996. 8. 8.>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 ④ (경과조치)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금융 45160-5, 1995. 1. 13.)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1-나”중 “융자종결기한까지”를 삭제한다.
“Ⅱ-2-바”를 삭제한다.
- ⑤ (경과조치) 1996년도 사업시행지침에 사업주관기관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에 대하여는 사업지원과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개정 1996. 8. 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 10. 19.>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은 1997년도 사업자금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금융 51060-145, '96. 8. 1.)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2-(4)”중 “20%를 초과하고”를 “20%이상이고”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이상인”으로 한다.

“Ⅲ-4-(2)”단서중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농·수·축·임·삼협중앙회(회원조합포함)인 경우 및 사업지원과에서 별도로 정하는”을 삭제한다.

“Ⅲ-4-(7)”중 “이자회수시기를 대출기한내에서”를 “이자납부주기를 1년의 범위내에서”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산림개발기금융자업무지침(산림청 일정51060-302, “96. 8. 19.)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2-(4)”중 “20%를 초과하고”를 “20%이상이고”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이상인”으로 한다.

제4조 (다른 훈령의 개정) 농수산물가격안정및유통개선사업실시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1조제4항제2호중 “100분의 20을 초과하고”를 “100분의 20이상이고”로,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이상인”으로, “100분의 20이하”를 “100분의 20미만”으로, “2억원 이하”를 “2억원미만”으로 한다.

② 제14조제4항중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지원기관은 사업자금과의 의견을 받아 처리한다”를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지원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금과에 요구한다.”로 한다.

제5조 (다른 훈령의 개정) 축산발전기금융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100분의 20을 초과하고”를 “100분의 20이상이고”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이상인”으로 한다.